

표지 면지

(표지와 똑같은 면지가 흑백으로 들어갑니다)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참가신청
QR코드

일시 2024.11.26.(화) 10: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YouTube 온라인생중계 김선민TV

전체사회 | 황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주제	발표자
10:00~10:15	인사말	
[주제 1] 탈시설과 아동인권- '가정형 거꾸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small>좌장 정선욱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small>		
10:15~10:45	[발 제]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공백과 우려	김희진 변호사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10:45~12:00	[패널 1] 시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 주거권	연호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패널 2] 위기아동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 필요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안의 범주와 방향성	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패널 3] 아동초기보호체계 개편안 및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진행 경과	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지원과)
	[패널 4]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와 아동보호체계 정부 개편안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질의응답		
휴식 및 점심시간 : 12:00~13:00		
[주제 2] 디지털과 아동인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small>좌장 소라미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small>		
13:10~13:40	[발 제] 디지털 공간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13:40~14:50	[패널 1]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패널 2]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자기 보호 활동 방안	김봉섭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
	[패널 3]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 4] 아동청소년 성교육 현황과 과제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질의응답		
휴식 (20분)		
[주제 3] 학교와 아동인권- 교권4법 개정 이후 <small>좌장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small>		
15:10~15:40	[발 제]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	이재호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15:40~16:50	[패널 1] 권리주체로서의 학생인권	수영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패널 2] 학부모로서 현재 제도 변화의 우려점	이윤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패널 3]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의 지향점	조영선 교사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패널 4] 교육3주체 갈등과 회복을 위한 대화가능성	박숙영 대표 (평화비추는숲)
질의응답		
16:50~17:00	전체 정리 및 폐회	

공동주최 | 공익법단체 두루,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브라더스키퍼,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사), 아동인권포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가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탁틴내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홀리스행동, 국회의원 김남희, 김선민, 김영호, 김예지, 남민수, 문정복, 백혜련, 서미화, 용혜인

CONTENTS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주제 1] 탈시설과 아동인권—'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발 제**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공백과 우려 3
김희진 변호사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 토론 1** 시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 주거권 31
연호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토론 2** 위기아동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 필요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안의 범주와 방향성 35
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3** 아동초기보호체계 개편안 및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진행 경과 40
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토론 4**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와 아동보호체계 정부 개편안 43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 2] 딥페이크와 아동인권—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 발 제**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49
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 토론 1**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71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 토론 2**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자기 보호 활동 방안 76
김봉섭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
- 토론 3**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92
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토론 4** 아동·청소년 성교육 현황과 과제 98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CONTENTS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주제 3]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

발 제	학교와 아동인권—교권4법 개정 이후	109
	이제호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토론 1	권리주체로서의 학생인권	133
	수 영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토론 2	학부모로서 현재 제도 변화의 우려점	138
	이윤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토론 3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의 지향점	143
	조영선 교사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4	교육3주체 갈등과 회복을 위한 대화가능성	164
	박숙영 대표 (평화비추는숲)	

축사



축사



국회의원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아동인권 지원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동주최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탈시설과 아동인권', '딤페이크와 아동인권', '학교와 아동인권' 등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살펴보고,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수님, 변호사님, 활동가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신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가정형 보호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에서 탈시설 추진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거주 시설로의 전환만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탈시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기반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약 76%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처벌강화 등 매년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반복적인 대책을 논하기 전에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발생 원인 등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교권과 학생인권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불거져 서울과 충남에서 조례 폐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통제권한 강화와 문제 학생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 보장, 인권침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논의된 내용을 귀담아 듣고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패널로 참석해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연호 활동가님, 류정희 연구위원님, 임아람 과장님, 김선숙 교수님, 이승현 박사님, 강미정 팀장님, 김봉섭 연구원님, 배상률 박사님, 애현숙 대표님, 이제호 변호사님, 수영 활동가님, 이윤경 회장님, 조영선 교사님, 박숙영 대표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정선욱 교수님, 소라미 교수님, 김진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김남희

축사



국회의원 김선민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아동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보호 체계 곳곳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대와 방임으로 위협에 처했으나 발견되지 못한 아이들,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돌봄과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아동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시설에 머물러야만 하는 아이들, 법적 신분 문제로 복지에서 철저히 배제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이 더해지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선언적으로 존재할 뿐, 이를 모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탈시설과 아동인권,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아동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기관과 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인권 증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김선민

축사



국회의원 김영호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되는「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뜻을 모아 함께해주신 모든 단체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아동인권을 위해 언제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써 공동주최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AI 딥페이크 성범죄, 지방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등 많은 곳에서 아동인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가 대부분이라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규제와 처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선도와 교육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몇 지방의회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며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를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닌 공존·상생 관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학생인권법’ 제정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 역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김영호

축사



국회의원 김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공익법단체 두루를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황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님과, 발제를 하실 김희진 변호사님, 이승현 박사님, 이제호 변호사님, 그리고 패널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이러한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아동이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관이 서류를 조작해 조직적으로 아동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 입양 보낸 나라이며, 지난 2020년에도 세계 최대 아기수출국 3위로 꼽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단체에서는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보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7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국가의 감시체계에서 벗어난 미신고시설들을 방치하고 있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의 권리는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박스 등 불법적인 미신고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철거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

엔 아동권리위원회는 5,6차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에 아동에 대한 익명유기를 조장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하루빨리 아동의 유기를 막고, 시설 밖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토론회에 오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김예지

축사



국회의원 남인순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제2회 아동권리 주간 기념: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토론회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김남희·김선민·김영호·김예지·문정복·백혜련·서미화·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탈시설과 아동인권’, ‘딥페이크와 아동인권’, ‘학교와 아동인권’을 주제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님,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특별히 천명하며,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아동을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참혹합니다. 댁페이크 성착취와 같은 사건들은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댁페이크 성착취 사태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 잘못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현 정부의 태도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우 무책임하고 문제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은 아동들에게 단순한 배움의 장소를 넘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 뿐 아니라 학교와 그 밖의 시설에서 일정 정도의 폭력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쓰며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남인순

축사



국회의원 문정복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힘써주시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외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오늘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전국교수연대회의 남중웅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동은 단순 보호 대상을 넘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주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 권리는 인간의 권리 그 이상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곧 사회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아동들은 여전히 학대와 폭력, 빈곤 차별 등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책적인 노력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동들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가 이러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개인, 하나의 기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오늘의 행사가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어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아동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문정복

축사



국회의원 백혜련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아동권리주간을 맞이해서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생율 0.78명으로 이미 국가적 위기 상태입니다. 늘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귀했지만, 이제는 더욱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출생율을 제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최근 5년간 219명으로 아동학대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중 70%, 피해자의 60%가 청소년이었습니다.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되어 임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체계는 아직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AI와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아이들은 딥페이크 범죄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는 선생님, 아이들,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보호 환경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환경과 제도적 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나온 고견들을 잘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백혜련

축사



국회의원 서미화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제2회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한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선민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이라는 토론회의 제목이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아동의 권리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현안들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약속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 학교 내 인권 문제 외에도 수많은 아동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사회를 맡아주신 황준협 위원장님과 각 주제의 발제와 패널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분을 비롯해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서미화

축사



국회의원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이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도 어느덧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는 열악합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가 아닌,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 10대 청소년을 '딥페이크 가해자'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권4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 보장, 교사 노동권 보장, '위기학생' 지원체계 수립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토론회의 제목처럼 아동인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거꾸로' 후퇴하는 현실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토론회가 참여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후퇴하고 있는 아동인권 논의의 방향을 바로잡고 현명한 대안을 도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논의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주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공동주최 단위와 선배동료 의원님들, 발제자와 패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도 아동인권의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고, 노키즈존 근절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교권4법 개정에 기권표결을, 보호출산제 제정에 반대표결을 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아동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 용혜인

주제 1

탈시설과 아동인권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발제문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공백과 우려

김희진 변호사(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공백과 우려

: 정부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초기보호체계 구축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김희진 변호사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¹⁾)

1.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1) 아동초기보호센터

- 현행 일시보호시설을 시·도 단위의 '(가칭)아동초기보호센터'로 변경
- 아동 40명, 종사자 45명, 보육사 30명(아동 4명당 1명 배치 및 3교대 근무 반영)²⁾
- 초기 치료, 욕구 파악 후 입양·가정위탁·시설보호 순으로 양육대책 수립하여 적정 보호조치하도록 기능개편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전 아동초기보호센터에 아동을 우선 배치하여 일시보호조치 시행

<아동초기보호센터 구축안의 문제점>

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무력화

-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 전에는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아동복지시설장이 보호조치의 종료, 연장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었음. 현재에는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지자체장(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시설 관계자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위임받은 종사자이나, 아동보호의 공공화 맥락에서 그 권한의 층위는 분명히 다름
-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안」(이하 '개편안')은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주체를 명시하

1)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은 시설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을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복지·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입법활동을 목적으로 2024. 6. 25. 발족하였으며, 시설보호 당사자, 아동·청소년 활동가 및 연구자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 관계자, 인권단체, 법률가단체 등 총 27개의 모임과 개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인권포럼,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외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포럼, 홀리스행동)

2) 김형모(2024). 경기도 아동보호의 현황 및 대응체계. 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 자료집. 53쪽.

지는 않으나, “현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의 뉘앙스에서 볼 때,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임. 이 경우, 시·도마다 아동초기보호센터가 확충되는 것 외에 사실상 현행의 일시보호시설³⁾과 그 구조적 실체가 같음

- 아동초기보호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여기에 “양육대책 수립” 및 “적절한 보호조치”까지 하도록 개편된다면,⁴⁾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를 잠탈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일시보호의 단기성, 가족재결합 촉진, 대안양육의 가정보호와 대안 모색의 실천은 부모를 갈음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보호하는 아동이 있어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확보할 수 있는 주체가 오로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 ▶ 최소한 일시보호시설로서 시·도 단위에 아동초기보호센터를 설립한다면,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일시보호의 단기성, 영구적 가정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보호·사례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여야 함. 이와 더불어, 분리된 보호대상아동과 양육자의 접근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위치와 운영에 대한 유연한 고려가 요구됨

② 일시보호부터 예외 없는 시설 배치를 통한 시설 유지의 관점

- 「아동복지법」은 재학대의 우려가 높거나 학대피해로부터 보호가 긴급한 경우, 혹은 가정외 보호조치(3호~6호)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적합한 가정위탁이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이하 “일시보호조치”)할 수 있다고 정함(제15조 제6항). 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또한, 지자체장이 3호부터 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동법 제

3) 2022.12.31.을 기준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외에 12개 시·도에서 총 17개소의 아동일시보호시설(서울 2개소, 광주 2개소, 경기 3개소, 강원 2개소, 그 외 각 시·도에 1개소)이 운영 중임(2023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참조)

4) 보건복지부(2024.09.25.).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김선민 의원실 보고자료). 8쪽.

15조 제3항)

-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일시보호를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적 사전·대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⁵⁾ 일시보호의 필요를 예외적 재량사항으로 두며, 가정외보호의 일시성·단기성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는 한계는 있지만(아동일시보호시설 배치의 보호기간만 정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가정위탁 일시보호의 기한은 법령에 없음), 적어도 가정외보호(3호~6호)를 조치하기 전에 일시보호의 필요를 검토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환경과 심리 상황을 충분히 살피도록 하는 등 가정환경 보호의 원칙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할 것임
- 일시보호의 경우에도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유형을 두어, 가정환경 보호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음
- 그런데 개편안은 “사례결정위원회 전 아동초기보호센터에 아동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예외없이 생활시설을 거치는 형태를 예정함. 아동초기보호센터의 보호기간은 단기에 한하겠지만, 또 다른 시설보호의 경로로 활용될 뿐임
- 종사자의 배치·근무기준 변경, 초기 치료기능의 강화는 현행 일시보호시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동초기보호센터’를 도입하는 핵심 이유는 결국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시설에 일시보호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임.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이라는 명칭은 기실 ‘초기 시설보호 의무화’라 할 것임
-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가정보호 원칙은 이른바 “증장기보호”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님. 아동보호초기센터를 포함한 일시보호 단계에서도 가정환경 보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되어야 함.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정외보호의 일시성·단기성이 법과 지침에 명시되고,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를 위한 “후견 위탁”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정보호 유형도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임

5) 보건복지부(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148쪽 참조.

〈아동초기보호센터 구축안의 모호성〉

-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민간위탁 형태일 경우 관리·감독의 적절성은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시·도의 사회문화적 환경, 교통여건 등 아동과 보호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아동초기보호센터 설립계획도 개편안의 세부내용에 검토되어야 함
-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일시보호는 아동초기보호센터와 어떻게 구분되어 이용되는지도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사례회의(사전 실무회의)

- 기존의 사례회의(내부회의 성격)를 시·도 단위 관계자(지자체 아동보호팀 담당자 외에 아동초기보호센터 종사자, 시·도 아동복지협회 관계자(협회장 등, 필요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장 등 동행하여 참석 가능),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룹홈 종사자 등)가 참석하도록 개편
- 초기보호 관찰 및 아동 욕구와 의사 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보호조치(안) 마련하고, 이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사례회의 개편안의 문제점〉

-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아동학대 대응을 포함한 아동보호의 공적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이는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방편으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아동보호의 초기상담 일원화 및 아동보호전담 요원의 보호아동 사례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공공화” 작업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에 방향성을 두었음⁶⁾
- 참고로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지자체장이 보호조치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제15조), 실제로는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이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점, 사실상 공무원의 역량이 확보되기 쉽지 않은 여건에서 지역사회의 보호 자원, 특히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시설의 의견이나 선호, 이익 추구 가능성 등)에 따라 배치가 결정된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⁷⁾

6) 보건복지부(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4쪽.

7) 허남순·이혜원(2006).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2), 95-126.

- 사례회의의 개편안은 보호조치를 논의하는 구성원에 지자체 담당자와 아동초기보호센터 종사자, 시·도 아동복지협회 관계자(협회장 등, 필요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장 등 동행하여 참석 가능),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룹홈 종사자 등이 필수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데, 이는 과거로 회귀하는 형태임. 이 경우, 아동의 보호 배치가 아동의 연령과 상황적 특성, 개별적·특수적 욕구를 고려한 객관적·중립적·전문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사회의 보호 자원에 따라 결정될(예컨대, 아동이 살아온 여건보다는 시·도 단위에서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위탁가정이 있는지, 그 시설·위탁가정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르는) 우려가 큼. 특히 시설 관계자는 보호아동의 수가 많아져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현재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일수록 시설이나 인력 부족, 다른 아동과의 불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호를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초기 결정을 관계자에게 맡기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수록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짐. 보호 자원의 여건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도 무력화될 수 있음
- 다시 말해, 사례회의의 개편안을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1) 일시보호의 여부와 형태를 결정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사라짐, (2) 예외 없이 시설보호되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과 개입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아동과 직접적·독립적으로 접촉할 필요나 여건이 축소됨, (3) 지방자치단체와 사례결정위원회 판단의 시급성이 줄어들어, (4)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 전에 시설 관계자의 판단이 개입하고, 어쨌든 먼저 해당 아동을 돌보았으므로 의견 피력에 특별한 권위를 얻게 됨, (5) 보호대상아동이 시설배치 경험을 반드시 한 번은 갖게 된다는 차이를 발생시킴. 이러한 각각의 변화에 어떤 정책적인 실익과 목표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함
- ▶ 사례회의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력 확충 및 직업 안정성 확보, 교육훈련 체계화, 시·군·구와 시·도 단위의 연계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 과제임.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 연령을 아동기 전반으로 넓혀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시·군·구 아동보호체계를 시·군·구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아동학대·보호 및 자립, 청소년안전망, 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등)로 확장하는 통합 개편안이 모색된다면, 지역사회 단위에

서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통찰하는 보호계획이 설정되고, 이를 지지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 양육시설 전문화 기능개편 (기능보강 복권기금 확보)

1) 특수아동시설: 경계선지능, 학대 피해, 문제행동, ADHD 아동을 치료, 지원

〈특수아동시설 확충안의 문제점〉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제4조 제3항). 특수육구아동도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개별적·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만큼 양육자의 역량이 중요하게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전문가정위탁은 2021년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법 제14조 제1호), 지방이양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것이 2022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
- 양육시설 기능개편의 한 유형으로 추진되는 “특수아동시설”은 시설보호 형태를 유지·강화한다는 점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수육구아동의 시설 배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아동의 가정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무를 강화해 온 일련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방안임
- ▶ 특수아동시설을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을 위기의 층위에 따라 나누되 모든 아동·청소년의 보편적·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동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것,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친족돌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탁가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 위탁가정 양육자에 대한 돌봄·지원체계 확충, 양육 상담과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재결합 관점의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나아가 영구적 보호환경으로서 입양과 후견보호(guardianship care) 제도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과제가 제안되

어야 함

〈특수아동시설의 모호성〉

- 개편안은 보호대상아동 중 장애아동을 비롯한 특수육구아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특수아동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면서도, 특수아동시설의 대상에 장애아동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⁸⁾ 이러한 기술이 장애아동 보호를 아동보호체계가 아닌 장애인복지지원체계로 분리하려는 의도인지, 장애아동도 아동초기보호개편안의 보호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위탁가정과 그룹홈 형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음에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특수아동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이 경우,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아동의 보호유형 배치(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쉼터, 특수아동시설)가 달라지는지는 나타나지 않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유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돌봄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동의 시설 배치가 결정될 우려도 큼
-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는 어떤 형태로든 정서·심리·발달상의 어려움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부터 ‘특수육구’가 있는 아동인지 판단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특수육구의 유무는 (이미 의무화된 초기보호를 통해 그 견해가 특별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초기보호센터 종사자, 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례회의에서 사실상 판단/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시설이 보호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될 중대한 우려가 있음

2) 자립지원 전문시설: 보호종료 前 준비 및 자립 환경과 유사 공간 제공 등

〈자립지원 전문시설의 문제점〉

- 자립생활관(「아동복지법」 자립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자립지원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포함) 또한 청소년기 아동의 시설보호 형태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 전환” 계획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설의 기능특화를 명목으로 자립지원 전문시설이라는 별도의 시설 유형이 추가됨

8) 보건복지부(2024.09.25.).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김선민 의원실 보고자료). 5, 8쪽.

- 적극 해석하여 현행 제도의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의 형태를 모델로 한 것인지의문이나, “자립 환경과 유사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독립주거를 포함한 주거복지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⁹⁾ 이는 가정형 거주 전환도 아니며, 일정 시기에 이르면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환경 변경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 원칙도 외면하는 방안임
- 한편, 복지부는 로드맵 수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관련 모델링 발표”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 2024. 11. 5.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주최한 제1회 아동복지대회 기조강연으로 발표된 자료에서는 “특수욕구아동 자립지원전문시설(생활시설-기본형/이용시설-센터형)”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통합 자립지원 모형(특수욕구를 가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시설/가정위탁/그룹홈 보호아동 및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아동 대상)”이라 지칭함. 보호대상아동 또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자립지원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된 시설의 존재는 운영의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 없이 시설보호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낙인 감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임
- ▶ 부처의 경계를 넘어 가정 밖의 모든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통합된 하나의 자립 지원체계에서 개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시설보호 외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대상아동, 가정밖청소년, 위기청소년 등도 통합된 자립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해야 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거주 선택지(성인 보호자가 동거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를 포함)를 다양화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확충될 필요가 있음

〈자립지원 전문시설의 모호성〉

- 양육시설 기능전환을 통한 자립지원 전문시설이 현행의 대규모 양육시설의 담벼락 안에 있는 별도의 “생활관”도 포함하는 것인지,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별도 주거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함. 후자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설계되어야 함
- 아동복지협회가 제안한 것처럼, 특수욕구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전담기관을 계

9) 유엔총회 결의 대안양육 지침은 “관리감독되는 아동의 독립주거형태”도 대안양육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음 (A/RES/64/142, para. 29(c)(V))

획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자립지원전문시설의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도 시설의 형태와 업무 범위를 알 수 없게 함. 참고로 현행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례관리사가 1:30의 비율로 업무를 담당하는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요원 배치기준은 기본적으로 1:8(해당 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등 평가결과에 따라 청소년 1명을 1.5명, 0.5명으로 간주하여 관리할 수 있고, 자립지원요원이 4명인 시설은 연간 50 사례를 목표로 함)이고,¹⁰⁾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에서는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1:10) 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¹¹⁾ 인적 기준에 대한 계획이 필수로 수반되지 않는 한, 자립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3) 원가정복귀지원시설: 면접교섭 및 취약가정 지원 통한 아동 원가정 복귀 도모

〈원가정복귀지원시설의 문제점〉

- 아동이 분리된 상황의 가족재결합은 가족관계가 이어지느냐, 이를 위해 얼마나 갖은 빈도로 양질의 만남을 갖느냐,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공의 조력이 핵심임. 분리조치에서 비롯된 아동과 그 가족의 상실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재결합 촉진과 재분리 예방을 위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의 맥락에서 가정복귀가 점검되어야 함. 가정복귀가 적합하지 않다면, 영구적 가정환경을 확보하는 조치가 국가의 책무로 이행되어야 함. 이에 따를 때, 원가정복귀지원시설은 그 개념 자체가 모순됨
- ▶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기보다, 아동의 양육하는 대안가정이나 시설의 면접교섭 조력(예컨대, 우리는 일정 시기만 당신(부모)과 함께 돌보는 사람이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당신 가족을 돕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지자체의 사례관리 실질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등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임

〈원가정복귀지원시설의 모호성〉

- 원가정복귀지원시설이 아동과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생활시설을 의미하는지, 원만한 면접교섭을 돕기 위한 이용시설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후자의 경우, 양질의 면접교섭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는 있겠지만, 이

10) 여성가족부(2024).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II). 431쪽.

11) 여성가족부(2024).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7쪽.

때에도 분리된 시기의 주양육자인 위탁부모나 돌봄 종사자와 원가정 양육자의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면 원가정복귀지원시설의 존재 의의에 설득력이 없음

4) 영유아전문시설: 보호출산 영유아에 대한 전문 보호서비스 제공

〈영유아전문시설의 문제점〉

- 개편안은 연례 발생 보호대상아동 1,186명(2022년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1,397명은 제외한 수), 보호출산(2024년 7월 시행)으로 입양기관에서 보호되었을 아동 300여 명 등 매년 1,400명 아동의 초기보호가 필요하다고 예측함
- 이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제3조 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입양의 원칙을 명시한(제3조 제1항) 취지와 모순되는 계획임.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어도, 기존의 유기아동이나 입양대상 아동의 수는 줄어들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으로, 개편안은 “영유아 시기 뇌발달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정형보호 통한 특수육구 예방”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데,¹²⁾ 영유아전문시설은 시설의 구조적 소규모화를 피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가정보호에 해당할 수 없음. 참고로 2023년 정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는 가정형 보호의 개념적 특성으로 ① 일관된 양육자, ② 인원 규모, ③ 독립적 일상생활, ④ 독립된 일반주거 형태, ⑤ 최저주거기준 충족을 제시하였음
- ▶ 공동생활가정의 영유아 보호를 유도하면서, 그룹홈의 보육사 1인당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기 집중케어를 가능하도록 하고,¹³⁾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사례회의에서 영유아는 가정위탁·그룹홈 우선보호를 유도하도록 하겠다는¹⁴⁾ 계획과도 일관성이 없음. 이러한 원칙과 실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영유아전문시설은 불필요하다 할 것임

12) 보건복지부(2024.09.25.).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김선민 의원실 보고자료). 8쪽.

13) 보건복지부(2024.09.25.).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김선민 의원실 보고자료). 8쪽.

14) 보건복지부(2024.09.25.).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김선민 의원실 보고자료). 9쪽.

3. 가정형 보호 활성화

1) 입양/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상향

연령	'22년 신규보호아동	현행 양육보조금	개선	비고
0~2세	420명	전문가정위탁 지원 (1인당 월 100만원)		좌동
3~ 7세 미만	295명	30만원 이상	34만원 이상	(혈연, 90.6%) 좌동 (비혈연, 9.4%) 20만원 추가 지급
7세~13세 미만	607명	40만원 이상	45만원 이상	
13세 이상 *연장보호아동포함	559명	50만원 이상	56만원 이상	

-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안」은 위의 표와 같이 비혈연가정위탁 상향 계획을 제시하며,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 협의 후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 밖에 위탁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월 623,000원)을 지원 받음
- 입양양육지원금은 2025. 7.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에 맞추어,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제시됨

〈입양/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상향 계획의 한계〉

- 개편안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양육보조금 상향을 제안하고, 시·도국장회의를 통한 예산확보 권고 및 지역별 현황을 공표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그 대상을 비혈연 일반가정위탁에 한정해 더 취약할 수 있는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중인 아동(비공식 친족돌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 않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친인척 일반가정위탁아동(자산조건 등 충족)과 친족돌봄을 다르게 처우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음
- 비공식 친족돌봄, 친인척 가정위탁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에 격차를 두지 않고, 모든 위탁가정에게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이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친족이 돌보는 아동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대상아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이는 가정환경의 지속적·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혈연·비혈연 위탁부모에 대한 돌봄·지원 체계(휴가·병가 등)도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함
- 입양가정의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영구적 가정환경이 확보된 결과이기 에,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의 관점에서 지원이 제공되는 관점이 요청됨. 오히려

양육보조금보다 입양아동의 사후관리로서 양육코칭이나 상담과 지원체계를 확충·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 있음

2) 위탁가정 양육코칭 프로그램

-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과 조손가정(친인척 위탁가정 또는 친족돌봄)을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호자의 양육역량을 강화함

〈위탁가정 양육코칭 프로그램의 한계〉

-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조손가정이 친인척 위탁가정을 의미하는지, 혹은 위탁가정이 아닌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중인 경우도 포함하는지 불명확함
- 양육코칭 프로그램이 아동의 특수한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면, 가정위탁의 모든 유형과 친족돌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겠음. 단계적 확대를 고려하더라도, 양육코칭 프로그램의 이용 범주와 확장 가능성도 논의되어야 함

3) 위탁부모 법적 지위 개선

-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 및 수술, 금융계좌 개설, 입학·전학 등 아동을 양육하면서 위탁부모가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함
- 위탁부모에게 제한적인 법적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2024.08.26. 김미애의원 대표발의)¹⁵⁾ 통과를 지원함. 해당 개정안은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의료 이용,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학적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군·구의 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위탁부모 법적 지위 개선의 한계〉¹⁶⁾

- 미성년 아동을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는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민법」이 친권에 관한 판단기준을 “자의 복리”라 정하고, 친권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상실과 제한만 가능하여 양육의 책임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 등에 따른 후견인이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선임되는 것 등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음

15) 의안번호 2203180

16)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정책별 현안분석(2024)」 연구 중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김희진)”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위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음

- 이처럼 아동을 위한 법정대리인은 포괄적 양육의 개념에서 그 책무와 권한이 해석되어야 하고, 친권을 갈음하거나 보충하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결과는 원칙적으로 친가정과 다름이 없는 영구적 가정환경으로서 공적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지자체의 보호조치에 따른 가정외보호 중인 상황은 일차적으로 가족재결합(친권의 기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직접적인 양육자가 일상의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양육을 위해 조속한 법률행위 대리권이 필요한 때에는 지자체가 친권을 대행한다는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
- 즉,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의 사례관리로서 친권 대행 업무를 수행해야 함.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권을 대행하는 이유는 보호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원가정 보호의 맥락에 있음. 지자체가 친권자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친권 대행이 요청되는 일들을 원만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요구됨. 이는 아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황이라도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도우면서 감독한다는 구조를 분명히 하는 작업임. 친권 대행의 사안이 있을 때, 친권자와 사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최상의 이익을 점검할 수도 있을 것임
- 개편안은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위탁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정한 법적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 제시할 뿐, 아동보호의 일차적인 목적(가정환경 보호)을 간과하고, 아동보호의 주체인 지자체의 책무(가정복귀 지원, 부득이한 경우 영구적 가정환경 모색)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자체의 가족재결합 지원, 단기를 한도로 하는 일시보호 및 후견위탁의 가능성, 필요시 지자체의 미성년공공후견인 제도 활용을 포함한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과제를 유기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4. 다루지 않은 과제들, 탈시설은 없는 개편안

- ▶ 현재 논의된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안」은 “탈시설/가정형 거주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없음
 - 개편안 수립의 배경이 된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은 “탈시설”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존속을 전제로 시설의 기능을 초기, 자립, 원가정, 특수아동, 영유아로 전환할 뿐, 대안양육의 시설보호 유형을 폐지하기 위한 흐름을 거스르고 있음. 정부 개편안은 제5·6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권고한 탈시설 로드맵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음.¹⁷⁾ 오히려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것임
 - 개편안은 영유아의 가정형 보호 방안으로 그룹홈 보호 유도를 제시하는¹⁸⁾ 등 소규모 형태의 거주시설도 가정형 보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유지됨. 그러나 그룹홈은 전략적으로 과도기 형태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시설보호에 해당함. 지금과 같은 보호체계 개편안은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할 뿐 가정형 보호라는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어려움
 - 거주시설을 유지하는 형태의 기능전환은 근본적으로 ‘가정형 보호’ 활성화라는 정책목적과 상치·모순됨. 전체적인 아동복지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거주시설에 투입되는 자원과 가정형 보호에 투입되는 자원은 당연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것임. 가정형 보호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개편안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함
 - ‘특수아동시설’, ‘자립지원 전문시설’, ‘원가정복귀지원시설’이 각기 거주·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가 명확치는 않으나, 만일 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거주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적어도 저출생 추세에서 시

17) 국제연합 기구는 공식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미편집본(advanced unedited version)”을 먼저 발표한 뒤, 당사국 정부의 추가 답변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나 표현을 조정한 최종본을 발간하기도 함. 대한민국의 제5·6차 심의에 따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해도 2019년 9월 27일에 미편집본이 나온 뒤, 같은 해 10월 24일에 최종 편집본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 9월에 발표된 미편집본에서는 “탈시설”이 명시되었다가(phase out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 concrete plan of action to deinstitutionalize), 최종본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phase out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 concrete plan of action)”로 수정되었음. 그러나 최종권해의 전후 취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시설보호의 폐지 전략은 곧 탈시설 전략과 다름이 없고, 위원회의 초고를 통해서도 나타났듯 탈시설은 아동의 권리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탈시설 계획 수립”을 위원회의 권고로서 상기함. 현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최종 편집본임.

18) 보건복지부(2024.09.25.).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김선민 의원실 보고자료). 8쪽.

설 중심 보호체계의 존속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가정형 거주로 ‘전환’은 실현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도 안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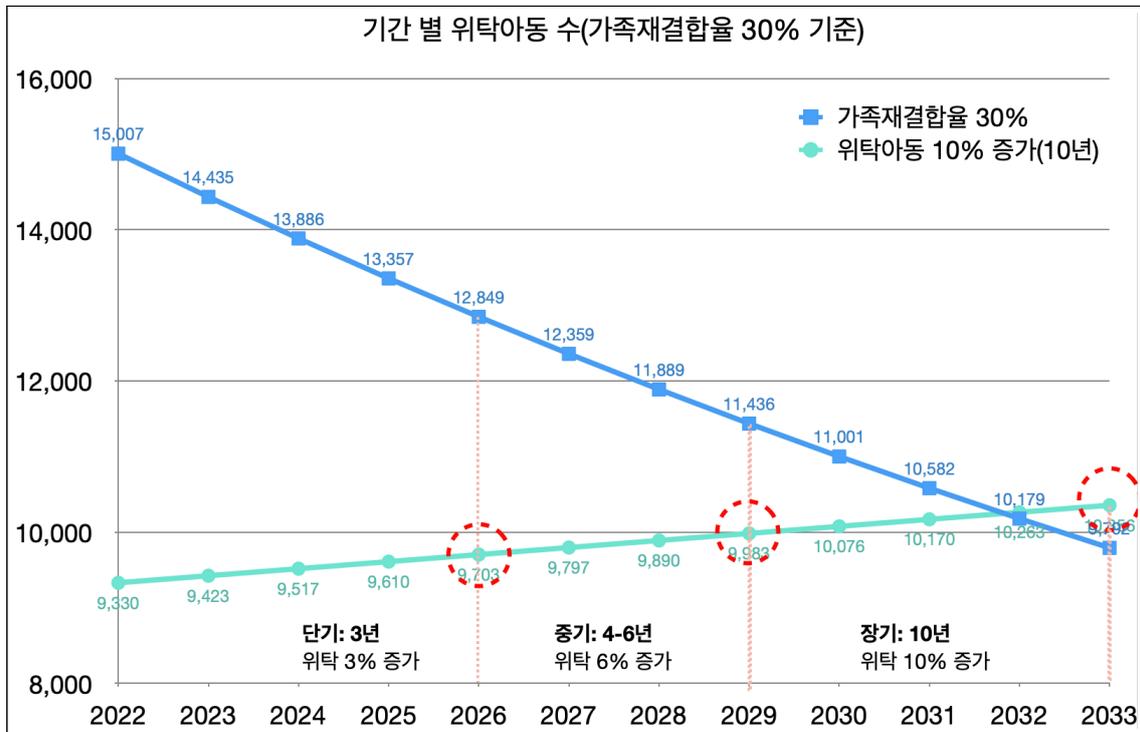
▶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논의는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여전히 “가정형 거주 전환”을 목표로 하는 보호아동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인지된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청소년복지지원체계를 이용하는 위기 청소년, 가정박청소년, 장애인복지체계에 관계된 장애아동, 아동사법과 관련된 보호소년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가정형 거주 전환이 모색되어야 함
- 단기에 한하는 일시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함. 현행 실무에서도 일시보호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아닌데, 행정적 조치로 일단 분리된 이후로 가족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현저히 미비하고, 이는 아동의 분리가 더 쉽게 결정되고, 분리가 장기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모든 유형의 가정외보호가 “단기”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후견제도 개편 및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의 유형을 추가·정비하는 법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입양은 영구적 가정보호인 반면, 가정위탁은 일시적 대리보호라는 개념상 차이도 있는데, 가정형 보호에 두 가지 보호 형태가 혼재되면서 사실상 중장기 보호의 가정위탁을 정책상 허용하는 한계도 있음.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환경(-안정적인,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영속적인 관계의-)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가정형 보호의 개념, 일시적·영구적 가정형 보호의 형태를 명료히 구분하는 작업이 요청됨¹⁹⁾
-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아동 양육 가구는 물론, 탈시설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이 확충될 때,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이 확장될 수 있음
- 시설의 기능전환(특히 이용시설로 변환)과 더불어,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생활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시설의 운영·유지가 정책의 필수 내용이므로 자원의 흐름을 전환하기 어려움. 모든 아동·청소년의 지역

19) 아동의 가정환경 보호는 “가정을 표방하는 보호(family-like/type care)”가 아니라 보호환경이 곧 아동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정보호/가족기반보호(family-base care)”의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이 “가정형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에 대한 확립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기에, 본 발표에서는 혼란을 줄이는 취지에서 가정형 보호라 표현함.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시설의 소규모화, 그룹홈의 활용 등이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의 한 내용으로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가정보호”의 용어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사회 기반의 가정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시설이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개편안은 가정위탁 활성화 계획만 일부 포함할 뿐, 아동의 가족재결합(가정복귀)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음.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지원」은 2023년까지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재결합율이 30% 이상, 위탁가정이 최소 10% 증가하게 되면, 모든 보호대상아동을 가정형 보호 체계 안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함.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가정형 거주 전환의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결과임



출처: 김선숙 외(2023).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 지원. 357쪽.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정책제안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 가족·친족 돌봄과 가족 재결합을 지원해 가정 분리를 예방
- 6세 미만 아동 거주시설 입소 금지, 거주·보호시설 단계적 폐지
- 가정위탁, 입양 국가책임 강화로 대안양육의 가정보호 활성화
- 주거, 복지서비스와 의사결정지원 결합해 지역사회 자립 촉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 9. 정부에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 및 촉진”,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를 권고
 - 가정에서 아동 분리는 최후 수단으로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분리의 유일한 이유가 빈곤이나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는 안 됨
 - 이외에도 국가는 아동의 탈시설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가정환경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원조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정부는 2022. 7. 국정과제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언급
 - 2023. 4. 아동정책 추진방안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을 발표하여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개선 의지 재확인
 - 2023. 11.까지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 수립지원 연구용역 실시
 - ※ 10년 이상 중장기 관점, 양육시설의 기능전환 및 소규모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목표
- 아동·청소년 탈시설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정부도 책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로드맵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탈시설 정책의 목표와 원칙, 추진전략을 제안

※ 해외 사례

- 미국: 연방 아동복지정책 목표로 “아동과 가족의 복지 증진” 명시, 주(state) 단위 가족·혈연·친족지원 및 분리예방 서비스 확대 장려
- 영국: 2023. “가정 우선” 이행 계획 발표,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가정’에 적절한 지원 제공함을 명시, 아동 배치에 관한 가정 주도의 계획을 강조

[목 표]

모든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양질의 돌봄, 주거 및 자립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한다.

[추진원칙]

1.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한다.
2. 아동은 보육·교육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한다.
3.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 관점에서 권리보장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아울러, 아동·청소년 모두의 가정환경과 주거권을 보장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개별화된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탈시설 정책 도입
 -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로 분절된 보호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책의 비일관성, 특히 현행 청소년 복지체계에서 발생하는 차등 축소

- 가정보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시설화 요소를 배제
 - 가정환경은 동일 생계 내 보호자와의 안정적 관계를 통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 환경만을 의미하고, 유·무급 직원 등 가족에 기반하지 않은 집단환경과 구별
 - ※ 기혼·미혼의 부모, 한부모, 동성부모, 입양가족, 친인척 돌봄이나 확대가족, 또는 1인 가구나 동거가족도 포함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보호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이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미혼모자, 노숙인, 피해자 등과 관련하여 시설화 요소가 있는 모든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함

[시설화 요소]

- 지원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함
-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임
-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의 격리 및 분리
- 일상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 결여
-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한 선택권 부족
-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한 일상의 경직성
- 특정한 통제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
-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 동일한 환경에 거주인 수의 불균형

□ 아동·청소년 탈시설 추진 전략

추진 전략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중심의 <u>가족 지원 정책</u> 강화 • 아동·청소년의 <u>가족 재결합 지원</u> • 재결합 아동·청소년의 <u>재분리 예방</u>
추진 전략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양육의 <u>가정보호</u> 촉진 • <u>6세 미만</u> 아동의 <u>거주시설</u> 입소 우선 금지 • 청소년 <u>자립 지원</u> 및 다양한 <u>주거정책</u> 개발
추진 전략 3. 법·제도적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u>법제 정비</u> • 차별 없는 <u>주거복지</u> 및 <u>통합자립지원체계</u> 마련 • 아동·청소년의 <u>참여권</u>과 <u>법률행위 능력</u> 보장
추진 전략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보호 목적의 시설 유형 <u>폐지</u> • 탈시설 아동·청소년의 <u>지역사회</u> 주거 기반 구축
추진 전략 5.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탈시설 <u>로드맵</u>에 대한 인식 증진 •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u>유기적 연계</u> 및 협력

추진 전략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 아동·청소년 중심의 가족 지원 정책 강화

- (가정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보강) 시군구 아동보호체계를 시군구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로 확장하고, 위기가정 발굴·개입·지원·교육·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분리 예방 기능 강화, 드림스타트 지원 확대
- (담당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체계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 확보 위해 증원 및 처우 개선하고, 아동복지심의위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과 보호자 참여 보장
- (아동사법 체계 연계) 수사기관·법원은 사법절차 유입 아동·청소년 인지 시 즉각 시군구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 연계, 시군구는 위기 정도와 보호의 적절성 필수적으로 사정,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주축으로 통계 작성 및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의 가족 재결합 지원

- (면접교섭 지원) 불가피한 분리 시, 시군구는 처음부터 면접교섭 계획 및 실행상황

집중 모니터링, 위기·갈등 배경과 개별특성 고려한 면접교섭 매뉴얼·지원 프로그램 마련 위해 예산 할당 및 전문인력 배치, 아동과 가족의 참여보장

- **(양육환경 조성)** 사례관리 시 적절한 가정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실행, 재결합 준비가정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등 입주우선권 할당
-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 가정복귀(재결합)를 비롯하여 입양, 청소년 독립생활과 후견의 결합 등 다양한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를 목표로 할 것을 명확히 함

□ 재결합 아동·청소년의 재분리 예방

- **(양육상황 점검 강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의미로 양육상황 점검을 재정의, 영구적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초기 1년간 집중지원
- **(지역사회 연결망 회복)** 지역사회 가족·보육·교육·의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정례화, 사례관리 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 인적 연결망 구축

추진 전략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 대안양육의 가정보호 촉진

- **(친족돌봄 지원 강화)** 친족돌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탁가정 수준으로 상향, 동일한 사례관리 수행
- **(가정위탁 활성화)** 위탁양육자 범위 확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자립생활 지원 전담인력 배치,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자와 동일한 돌봄·지원 제공, 위탁부모 휴가·병가 지원, 지역사회 정기 의료, 양육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입양 국가책임 강화)** 정부 차원의 해외입양 중단 공표,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아동보호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법제 정비

□ 6세 미만 아동의 거주시설 입소 우선 금지

- 시설 양육은 5세 이하 아동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 초래하여 국외에서 금지 추세
- ※ **일본은 미취학아동 시설 신규입소 금지**, 불가리아는 장애아동과 3세 미만 아동 시설 폐쇄를 우선 순위로 함

-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다양한 주거정책 개발
 - (통합적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모두 하나의 자립지원체계에서 개별화된 지원 제공, 자립지원서비스 대상·범위 확장,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사·지원인력 배치 기준을 현행 1:30에서 상향, 개별화 지원 제공 여건 마련
 - (청소년 주거권 보장과 대안모델) 일정 연령 청소년에게 지원주택 등 독립주거와 결합된 정착지원 허용, 공공주택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 구성
 - ※ 미국은 16~22세 청소년에게 다양한 주거환경·사회적 지원 제공하는 전환 생활 프로그램 운영 (2023. 바이든 정부, 지원대상 27세까지 확대 제안), 위탁양육 경험 있는 18~24세 홈리스 위험 청소년에게 주거 바우처 제공
 - ※ 영국은 홈리스감소법에서 아동서비스 당국의 협력의무 부과, 프랑스는 국가계획에 18~21세 청소년 이 주거 없이 위탁양육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

추진 전략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 (권리중심 기반 조성)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가정환경 중심 보호·지원체계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 지역사회 거주, 주거권 보장, 사회통합 원칙 반영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효적 운영) 위원회 권한 강화, 유사 정책조정기구(청소년정책위, 중앙보육정책위 등) 간 위계와 업무영역 정비, 상설 사무국 구성 및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할당, 아동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영향평가와 연계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 각 지원체계 간 협력근거 마련, 각 법률상 시설의 최후수단성 및 시설보호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명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탈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차별 없는 주거복지 및 통합자립지원체계 마련
 - (정책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 명시) 주거기본법상 가정 밖 청소년을 적용대상으로 명시, 기타 주거약자 지원 법령에서 탈시설 아동·청소년이 고려되도록 보완
 - (통합자립법 제·개정) 자립준비청년을 모든 가정 밖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관련

법령상 전달체계의 연결을 위한 개정 실시하여 통합자립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자립지원 법률안 제정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법률행위 능력 보장

- (의견청취권 보장) 관련 법령에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결정 참여권 보장 규정 명시, 특히 분리결정, 대안양육 및 보호, 양육계획, 면접교섭, 재결합 등 결정에 있어 의견청취 및 비중 있는 고려
- (법률행위능력 보장) 법정대리의 취지가 아동·청소년 의사결정의 대체가 아닌 미성년의 피해 예방임을 반영, 민법·아동복지법·시설미성년후견법 등 제도 간 관계 분석, 적용 실태 모니터링, 제도 체계 재정비

추진 전략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 거주·보호 목적의 시설 유형 폐지

- (탈시설 권리 선언) 국가 차원에서 보호체계 패러다임 전환 목표 로드맵 발표, 개별 조건과 관계 없이 지역사회에서 독립 생활할 권리 보장, 시설보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진상규명, 법적 구제·피해배상 등 시설보호 예방전략·정책 포함
- (시설화 투자 중단) 향후 10년 내 모든 형태 시설 유형 폐지 목표로 신규 설립 제한, 폐지 시점을 한도로 거주환경 개·보수 제한,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주거 및 개별화 서비스에 재정 할당하는 탈시설 목표·전략 설계하고 팬데믹 등 위기상황에도 유지
- (입소 인원 단계적 감축) 아동·청소년 퇴소 시 신규 입소 금지, 수용 인원 및 재원 조달 축소로 인원 감축하고, 폐쇄된 시설의 거주·보호 목적 재이용 예방조치 마련

□ 탈시설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주거 기반 구축

- (주거지원·유지서비스 활성화) 모든 아동·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포괄, 사회주택, 자기관리 공동주택, 무료 주거매칭, 주거차별문제 지원, 임대기간 법적 보장, 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가능성·접근성·경제성·문화적 적절성 등 주거 최소기준 개발

- (시설종사자 참여지원) 아동과 관계맺은 기존 인적자원이 권리옹호 파트너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

추진 전략 5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인식 증진
 - (아동정책기본계획 반영 및 모니터링)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탈시설 로드맵 반영 및 중장기 정책 공표·모니터링 지속, 범정부단위 추진 위해 제5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제8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연계
 - (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 시설인권실태조사, 시설거주 및 자립경험, 발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기초로 탈시설 방안 모색
 - (교육 및 홍보) 정부·민간 이해관계자 모두 탈시설 의미 안내, 더 나은 대안양육 방식 모색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모든 대중매체 활용하여 로드맵의 필요성·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국제규범·근거자료 상시 접근 플랫폼 구축
- 공공·민간 전달 체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 (지역기반 정책 시도) 지역 특성 고려한 단계별 시범사업 실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해 효과 및 소요예산 분석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참고자료로 상시 공개하여 중앙정부 단위 탈시설 예산 수립 및 기존 자원 재분배 근거로 활용
 - (중앙정부 지원 강화) 탈시설 정책 이행 전담인력 확보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업무·관계기관 조정기능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별 정책현황 수집·공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니터링과 점검에 반영
 - (민관협의체 구축) 민간 시민사회단체, 기관과 정기적 협의체 구축, 분리 예방접근을 강화하고 다각적 지원모델 개발

2024. 11. 26.

(이하 43개 단체)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공동체 나다, 다다다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뿌리의 집,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SHARE),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인권포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포럼(KDF), 홈리스행동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문

연호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 주거권

연호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모든 꽃이 똑같은 성장과정으로 크지 않습니다”

나에게 탈시설이란 시설의 부당함에 대해 맞서 싸우며 시설 밖에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탈시설은 억압적인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당한 규칙으로 돌아가는 삶으로부터 나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어 그 곳을 탈출했던 나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시설을 나와 서울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18세 이전에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나오게 되면,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이나 공무원은 무조건 다시 시설로 돌려보냅니다. 지자체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렇게 잡으러 오지 않으니 서울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설은 이런 곳이었다.

나에게 시설은 차별이 일상인 곳으로 기억됩니다. 40명이 같이 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4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9명이 한 방에서 함께 살아야 했던 곳이었는데, 사는 동안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규칙이 공부를 잘 하는 청소년에게는 관대하거나 느슨했습니다. 후원자 개인 결연이 쉬우니 어린 아동들은 더 많은 개인 후원을 연결했고, 나이가 많은 청소년은 지원이 별로 없거나 결연자가 많아도 연결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기회나 교육을 받을 기회 역시 어리거나 시설에 오래 사는 이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대형양육시설의 경우 아동 돌봄은 행정처리에 밀리곤 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동에게 어린 동생을 돌보게 하거나 관리하게 하면서 폭력을 용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시설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강제로 가게 하거나 현금을 다 내라고 하는 것, 핸드폰 수거까지... 너무도 많습니다. 주변에 한 친구는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함께 서울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보

육원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여기서 지내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권침해 상황은 일상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살면서 이런 불편함들을 가족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들어줄거라 믿으며 여러번 얘기를 했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어차피 안될테니까 그만 얘기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은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한다며 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무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일 전부터 실무자들은 어린 아동들에게 보육원에서 맞지 않았다고 하라며 세뇌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청소년들 중의 몇 명은 이런 기회만 기다리다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역시 선생님들이 다 너희들 잘 되라며 하는 거라며 달래고 돌아가는 게 다였습니다.

이미 들어가는 과정부터 아동의 의견은 배제됩니다. 청소년쉼터와는 다르게 아동양육 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살아야 할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건 거기 사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그곳이 집이라고 했지만, 9명이 한 방을 같이 써야 하며, 규칙에 의해 움직여야 했고, 집이 아닌 모두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던 곳입니다. 실무자들은 가족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중학생만 되어도 어디서 사는 지를 숨기도 싶어 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살기 어려웠던 이들은 저처럼 중간에 시설을 탈출해야만 했고, 제도의 밖으로 밀려나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견

이번 정부의 탈시설 계획을 보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이 떠올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계획안을 보니 대형양육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 양육시설을 가기 전에 1년 정도 살았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은 세명의 선생님이 교대로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무자가 바뀌었고, 계속 다른 사람이 있으니 계속 나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생활공간에도 CCTV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이기도 하니 오히려 숨을 곳이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는 시간 말고는 방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공동 생활 공간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답답함

때문에 그룹홈을 뛰쳐 나가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시설입니다. 또다른 형태의 시설로 바꾸는 것을 탈시설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이 민간에게 책임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는데, 시설에서의 경험을 생각해볼 때 지금처럼 아동의 의견을 얼마나 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내던 그 곳도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후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어린 아동을 후원받는 데에 이용하거나 홍보 영상에 어린 아동들의 사진을 마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리를 우선하게 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공공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시설을 나오고 싶어 가정위탁을 열심히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돈이 많은 사람, 친척이 있거나해야 가능했으니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누구나 가정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야 합니다. 현재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없으니 아무도 가정위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큰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자립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자립관이 시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립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면서 1년에 3일 정도 거기서 지내게했습니다. 요리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 밥은 시설에 가서 먹어야 했고, 자립관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규칙이 없이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저 규칙없이 자는 3일이 어떤 자립을 가능하게 할까요? 시설을 나가서 이제 스스로 온전히 삶을 꾸려서 살아야 한다면, 내가 직접 요리도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도 벌고 직접 써 보는 등 실전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자립교육은 영상을 틀어놓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단체교육을 가끔 하기도 했는데, 1:1로 지원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나에게 더 필요한 건 무엇인지, 배웠지만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물어보거나 의논할 데가 필요합니다. 시설수급을 일반수급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혼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함께 준비하고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결국 시설을 나오기 2-3달

전에 모든 것을 정신없이 해야 합니다. 집 정도 구하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 혼자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생기면 막막해집니다. 시설을 나오자마자 돈을 다 써 버린 친구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올 초에 중도퇴소자에게도 자립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 쉼터를 드나들며 거리를 전전해야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국가는 15세 이상 청소년을 또 다른 시설로 가라고 하면서 거리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이나 원가정이 아닌 곳에 사는 청소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원가정 복귀도 개인의 역량에 다 맡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엄마 만나러 나갔던 친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시설에서는 집에 갔다고만 했습니다. 절차는 있지만 관리는 안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친구 역시 몇 년동안 시설에서 한번도 연락이 안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갔으나 가정폭력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하는 친구들도 생각납니다.

제가 이전 KBS 인터뷰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사회가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고 유권자인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단절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탈가정 청소년도 가정 내 청소년과 같이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마음의 울림이 있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기아동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 필요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안의 범주와 방향성

류정희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가 간혀 있는 상황의 논리

- 만 9세~17세의 아이들, 아동과 청소년으로 나뉘는 아이들
 - 9~17세의 아동청소년이 어떤 주무부처의 정책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아동보호 체계의 대상인 보호아동이 되기도 하고 위기청소년지원체계의 대상인 가정밖 청소년이 되기도 함.
- 맡겨진 아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탈시설 대상에서의 배제로 이어지는 총체적 차별
 -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은 gateway에 따라서 보호에서 자립에 이르는 길 전반이 양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됨.
 -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모두 가정형 보호 또는 거주조건을 필요로 하나 이러한 논의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청소년이 가정밖청소년
- 예산과 인력의 확대 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 지방이양된 아동보호예산과 지역별 아동보호자원의 편차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와 조치, 치료개입, 보호종료, 자립지원의 전 과정에서 편차를 조정할 시도 단위 연계조정체계 부재

□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이 의미하는 것

- 너무 많은 시설, 너무 부족한 위탁가정-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 그 로드맵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구속하는 다양한 상황적인 논리를 깨어나가겠다는 선언
 - 현재 245개의 양육시설을 전문적인 치료, 자립, 원가정복귀지원 등 전문적인 보호아동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기능전환이 필요

〈표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3)

	구분	시설 수	현원
아동복지(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245	9,439
	아동보호치료시설	12	435
	자립지원시설	15	215
	아동일시보호시설	17	223
	아동상담소	10	
	아동전용시설	7	
총계		306	10,312

출처: 보건복지부. (2023d). 2023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

- 전체 가정외보호아동 중 위탁가정보호아동은 2022년 기준 전체 22,635명 중 42.7%인 9,65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90%가 혈연에 의한 친인척위탁으로, 전문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은 10%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름.
- 단계별 가정형 보호, 거주확대를 위한 전략의 가시적 수립을 통해 상황논리는 깨어질 수 있음.
 - 예컨대, 일본에서는 2016년 ‘새로운 사회적 양육비전’을 통해 향후 사회적 보호의 중심을 양육시설에서 가정위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 비율을 제시한 목표수치, 목표달성의 시기, 원칙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 광역 시도 사회적 양육추진계획⁴이 의무화되었는데, 취학적 아동의 양육시설 입소금지, 7년 이내 위탁가정 위탁률 75% 이상 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을 1년 이내로 단기화하는 기능전환 요구함.
 - 또한 가정양육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애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3세 미만 아동은 5년 이내, 취학 전 아동은 7년 이내 가정위탁을 75%이상 실현, 취학 후에는 10년 이내 위탁률 50%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류정희 외,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강화방안 연구, 2021).

〈표 2〉 보호유형별 보호아동 규모 및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가정 외 보호아동					신규 가정 외 보호아동(연도별)				
	시설보호*		가정보호*		계	시설보호		가정보호*		계
	아동 수	비율	아동 수	비율		아동 수	비율	아동 수	비율	
2018	15,065	56.0	11,822	44.0	26,887	2,449	62.5	1,469	37.5	3,918
2019	14,614	56.9	11,088	43.1	25,702	2,739	67.7	1,308	32.3	4,047
2020	14,482	58.2	10,415	41.8	24,897	2,727	66.2	1,393	33.8	4,120
2021	13,883	58.3	9,950	41.7	23,833	2,183	63.5	1,254	36.5	3,437
2022	12,981	57.3	9,654	42.7	22,635	1,294*	56.5*	995*	43.5*	2,289

출처: 이주연. (202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p5)

* 시설보호에는 아동양육시설, 임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됨.

* 전체 가정 외 보호아동 대상 가정보호에는 가정위탁, 입양이 포함됨.

* 신규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에는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 입양전위탁 등이 포함됨.

* 2022년부터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통계의 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연도별 추이 비교를 위하여 2022년 시설보호, 가정보호 아동 수 산출 보호, 가정보호 아동 수와 '일시보호 조치 내용'의 시설보호, 가정보호 아동 수를 합산(2021년~2021년의 방식과 동일)음을 밝힘.

□ 가정외 아동청소년 가정형거주를 위한 로드맵 수립 원칙

- 모든 아동청소년을 함께 차별없이 포괄해야 함.
- 정책수립 서비스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보호로부터 자립에 이르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돈”과 “사람”의 투자가 없는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은 불가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드맵의 쟁점사항 검토

- 가정형보호를 제공하는 위탁가정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의 부재
 -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의 규모확대
 -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사례관리 강화
 -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강화방안
 - 그룹홈의 소규모화, 특수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그룹홈으로의 특화방안
- 간판만 바꾸는 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우려
 - 양육시설의 기능전환은 기본적으로 이용형 시설(센터)로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함.
 - 응급한 상황인 고위험 개입이 필요한 가정외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모추계를 통한 전문적인 집중치료시설은 거주형 시설로 설계되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일시보호시설에서 초기보호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근거1)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 전문치료시설(이용형)을 통해 일시보호에서 중장기 보호에 이르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이용형 전문치료센터를 이용, 지속적인 심리정서상담치료 받을 수 있음.
 - (근거2) 사례회의를 통한 전문가의 사정 및 배치를 통해 초기과정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 1) 이것이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이관된 적이 아동보호체계공공화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로 이를 이해당사자인 민간시설장 등에게 넘기는 것은 시대적 역행
 - 2) 공공화는 장기간에 걸쳐 인력과 예산의 투입, 전문성의 강화를 통해 완성해야 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접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이 가장 선행해야 할 과제,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음. 초기 아동보호의 단계에서, 가정형 아동초기보호를 위한 전문가정위탁, 전문그룹홈의 확충 및 보호대상아동의 사정, 조치계획수립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초기보호의 국가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 (근거3) 시도단위의 연계조정을 통한 초기보호과정의 체계화 필요성
 - 아동보호관련 인프라 및 자원의 조정연계 기능은 초기의 일시보호 단계 뿐만 아니라, 조치보호, 자립지원에 이르는 아동보호의 전단계에서 필수적이며, 시군구 아동보호팀-시도 아동복지과(아동복지전담부서)-중앙정부(복지부) 간의 전달체계 간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동보호 전달체계 내 시도차원의 기능부여 필요함. 시도의 총괄조정업무는 시도 차원에서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
- 아동의 일시보호는 아동이 살고 있는 곳, 다니고 있는 학교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영유아 및 장애아동 및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위탁을 통한 가정형보호로의 우선배치를 현실화해야 함.
 - 보호대상아동 중 일시보호조치 된 아동의 비율은 2023년 전체 아동 1,746명

중 17.6%로, 전년 대비 4.1% 감소한 수준이며, 일시보호 조치 중 가정형보호는 13.6%, 42명으로 전년도 6.6%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음.

- 시설로 일시보호된 아동은 266명으로 전국 17개소 일시보호시설 정원 223명에 비해 많았으나, 절대치의 부족보다는 접근성이 더욱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17개 시도 단위의 시설형태의 일시보호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원거주지, 원적학교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주기 어려움. 이로 인해 보호아동이 일시보호시설 대신 청소년쉼터를 선택하는 경우 비일비재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로드맵에서 반영되어 해소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보호센터를 약 26개소(40명 정원 기준, 1040명)로 늘리는 것은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 대비 과도한 시설확충으로 이해됨.

〈표 3〉 일시보호 조치현황(2022-2023)

연도	일시보호 조치				보호아동		
	소계	시설		가정형보호		계	
2023	308	266	86.4	42	13.6	1746	17.6
2022	408	381	93.4	27	6.6	1881	21.7

출처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치료시설로의 기능전환

- 장애, 경계선지능, ADHD 아동과 같은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치료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료시설은 지역에서 아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용형 시설(센터)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아동의 서비스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통원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응급의 집중적인 치료개입을 필요로 하는 보호아동을 위한 단기집중치료시설을 특화된 형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아동전문치료시설은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초기보호부터 보호조치판단이 이루어진 이후 중장기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되어질 수도록 설계되어야 함.

아동초기보호체계 개편안 및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진행 경과

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과장 임아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자립 등을 위해
연구와 활동으로 애써주시는 전문가 및 활동가 여러분,
- 그리고, 국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남희, 김선민, 김영호, 김예지, 남인순, 문정복, 백혜련, 서미화,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출생 극복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 한명 한명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일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불가피하게 가정외 보호가 되는 경우 그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가정의 형태에서 보호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가정형 보호 원칙 기조를 정부는 지켜왔습니다.

- '23년 제정된 입양에 관한 법률의 내년 7월 시행에 따라, 정부는 현재 입양의 전과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초에는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서는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를 신설하였으며, 모든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에서는 가정위탁-그룹홈-복지시설의 순서로 아동의 보호조치가 고려되고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가정형 보호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발표한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장될 수 있도록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가정위탁 부모의 법적대리인 권한 부여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양육코칭 등을 통해 위탁부모에 대한 효과적 지원, 위탁아동의 안정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장기적 기능전환을 통해 초기보호 중심의 소규모화, 현장에서 요구되는 특수육구아동 치료, 원가정 복귀지원, 조기 자립준비 등에 맞춰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의 형태로 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 단계적으로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후 아동 보호·양육에서 주된 역할 맡아왔던 아동복지시설은 이제 지원시설로서 입양, 가정위탁 그리고 지역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가정형 보호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기관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 이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고, 시범사업을 통해 모습을 구체화하여 궁극적인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5년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이외에도,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시도의 총괄적 조정 기능 부여와 특수육구아동의 효과적 치료, 성년이 되어 독립할 아동의 효과적 자립 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책과정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이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와 아동보호체계 정부 개편안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한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이다. 2023년 본인을 포함하여 국내외 아동복지분야 연구자들은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77명과의 심층 면담과 협의체 운영을 거쳐 가정형 보호 활성화, 양육시설의 기능 전환, 원가정 보호 강화라는 세 축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연구는 연구를 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은 이러한 방향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보호체계를 시설 중심으로 회귀시킬 우려가 있다. 본 토론에서는 바로 직전에 복지부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던 연구자 중의 한사람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복지부의 초기보호센터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2023년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방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초기보호센터 도입의 문제점

1) 사례결정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약화와 공적 책임 후퇴

- 사례회의가 이미 아동보호전담팀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보호센터 사례회의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늘리고 사례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이다.

- 초기보호센터 사례회의에 민간 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시설 운영 중심의 논리가 보호조치 결정에 개입될 위험이 있다.
- 사례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는 구조로 변질될 경우, 공적 심의 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 사례결정위원회는 2016년 이전의 시설 중심 보호를 탈피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초기보호센터 도입은 이를 역행시키는 조치이다.

2) 시설 중심 보호로의 회귀

- 초기보호센터는 보호대상아동을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설계되어, 가정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상충된다.
- "임시 보호"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초기보호센터는 아동이 장기간 시설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이다.
- 기존 양육시설을 소규모화하거나 기능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방향에 반하는 조치이다.
- 시설 생활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3) 아동보호전담요원 역량에 대한 과소평가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이후 귀가율과 연고자 인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는 전담요원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¹⁾.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비율: 2016년 12.2%, 2017년 14.9%, 2018년 13.7%, 2019년 12.3%, 2020년 18.5%, 2021년 24.0%, 2022년 39.1%

- 초기보호센터는 전담요원의 판단을 보완하기보다는 업무 중복과 체계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구조이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위기 임신 지원 및 입양법 시행 등으로 전담요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역량 강화는 정책적으로 필수적이다.

1) 보호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발생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4) 정책적 비효율성과 비용 낭비

- 기존 응급 위탁가정 및 전문 위탁가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이다.
- 초기보호센터 운영에 투입될 예산이 가정형 보호 인프라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초기보호센터 도입은 관리와 감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호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구조이다.
- 유엔 아동 대안양육 지침이 권고하는 시설 축소와 가정형 보호 강화 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다.

3.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안

1) 가정형 보호 활성화

- 위탁가정 확대를 위한 전문 위탁가정 도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입양과 전문 위탁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형 보호 옵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원가정 보호 강화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기 위해 가족상담, 부모교육,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가족 회복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가족 재결합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
-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3) 양육시설의 기능 전환

- 기존의 대규모 양육시설은 소규모화되고, 가정형 보호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기존 시설이 단기치료센터, 대리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시설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기능 전환 과정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가정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4) 사례결정위원회의 강화

- 사례결정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사례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
- 사례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사례회의 간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5) 아동보호전담요원 수 확대 및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담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의 개별적 필요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처우를 향상시켜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적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4. 결론

초기보호센터 도입은 시설 중심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 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약화시키며, 가정형 보호 전환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상충되는 결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연구와 정책 제안을 재검토하고,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의 핵심인 **가정형 보호 활성화, 시설 기능 전환, 원가정 보호 강화**라는 세 축을 통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권리 중심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 2

딥페이크와 아동인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발제문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이승현 박사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1. 들어가며

연일 청소년 딥페이크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 수는 120명으로 이 중 10대 청소년이 91명으로 75.8%를 차지하였다.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전체 인원이 2021년 79명에서 2024년 7월 현재까지 14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자 수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언론은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의 가해 형태와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에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소년 관련 대책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또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가 중심에 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중 대부분이 10대 저연령 청소년이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정책에서도 딥페이크를 포함하여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르면 처벌된다는 법교육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실태 분석 중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이 왜 딥페이크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와 청소년이 가해자일 수 있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일상은 디지털이라는 무한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청소년 교육환경 역시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 환경,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다.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청소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세상 속에 있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디지털에서 다양한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의 눈높이와 인식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나와 타인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게 된다.

청소년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앞서, 청소년

년에게 무분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현 사회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확대와 디지털 산업 홍보에만 집중할 뿐 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어떻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는 되돌아보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시장 원리 속에서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청소년 딥페이크 현황과 실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어떠한 요인들로 딥페이크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딥페이크 현황과 정책 검토를 통해 수사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를 선도와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딥페이크 가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현황과 대응정책

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현황

2020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제작물 등을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가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찰청의 국정 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까지 297건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 수는 2021년 51명에서 2024년 1~7월 13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

〈표1〉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현황 (2021.1~2024.7)

(단위: 명, %)

연도	허위영상물 등 범죄 발생건수	전체 피의자 수	10대 피의자 수	10대 피의자 비율
2021	156	78	51	65.4
2022	160	85	52	61.2
2023	180	120	91	75.8
2024.1~7.	297	178	131	73.6

출처: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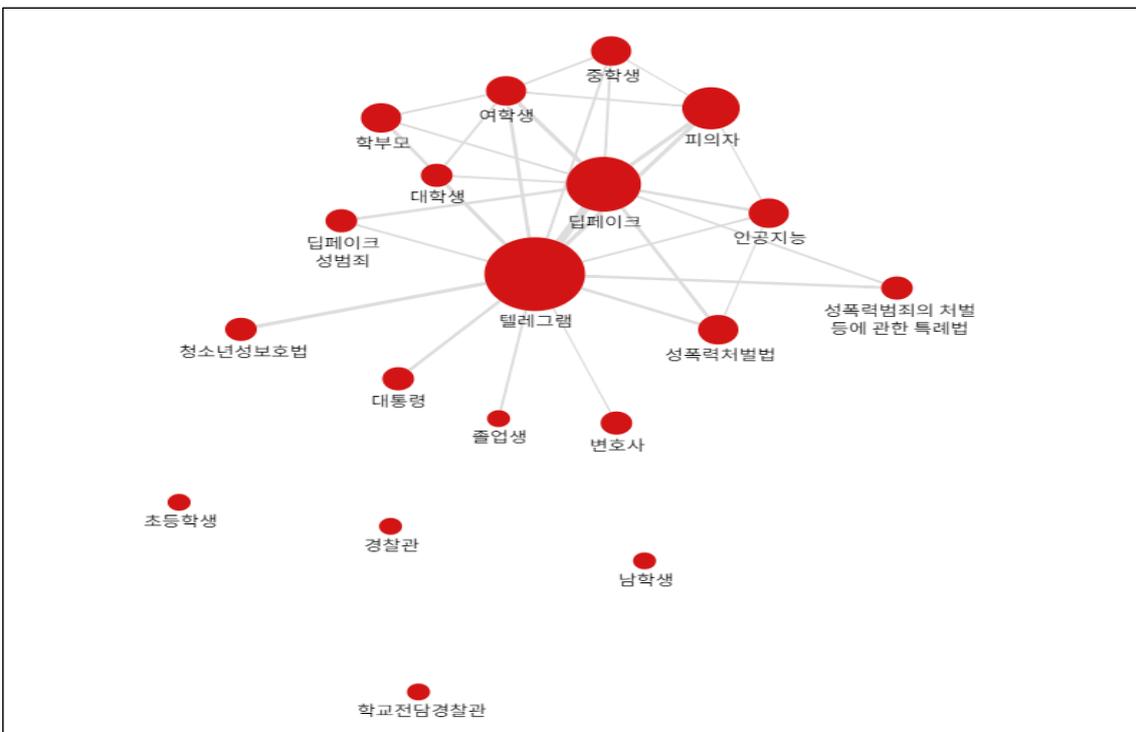
1) 한창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 심화시켜”, 2024.10.7.
(<https://blog.naver.com/hancmdj/223610153589>)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청소년 피의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므로, 청소년의 딥페이크 접근을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 언론에 비친 청소년의 모습

최근 언론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보도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통해 성착취를 사고 파는 행위부터, 학교 교사나 친구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에 비추어진 딥페이크 관련 청소년의 모습이 어떠한지 뉴스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인 빅카인즈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방송사와 일간지 사회면에 보도된 “청소년 딥페이크” 기사 1,077건을 분석해보았다.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키워드들은 중심으로 관계도를 분석해보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의자”라는 용어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중학생”이었다. 아래에 보면 “초등학생”에 관한 기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청소년 딥페이크 기사의 관계도

청소년 딥페이크 기사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연관어 분석을 해보았더니, “음란물”, “텔레그램”, “인공지능” “디지털 성범죄” 외에 “학교폭력”, “미성년자”. “촉법소년” 등의 기사가 눈에 띄게 된다.



〈그림 2〉 청소년 딥페이크 기사 연관어 분석

특히, 2024년 9월 26일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한달동안 기사 중 대표적인 기사 제목을 살펴보았다. ‘엄벌’, ‘10대’, ‘청소년’, ‘청소년 성범죄’, ‘촉법’까지, 마지막으로 언급된 기사 단 1건에서 ‘청소년 피해자’라고 언급된 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사에서 청소년이 딥페이크 가해자로 표현되어 있다.

〈표 2〉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주요 언론보도 기사

기사 제목	일간지명	보도일자
인천교사노조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해야" ²⁾	인천일보	2024.10.29.
미성년 '딥페이크 범죄' 성인의 2배...사건도 3배 급증 ³⁾	한겨레	2024.10.29.
교사 노조 "인천 딥페이크 가해자 96%가 청소년" 엄벌 촉구 ⁴⁾	한겨레	2024.10.29.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기승...대학생 이어 하다하다 중딩까지 ⁵⁾	매일신문	2024.10.26.
장난하듯 딥페이크, 범죄 늪에 빠진 10대들	조선일보	2024.10.26.
딥페이크 유포에 불법 도박까지... 디지털 범죄 물든 10대	기호일보	2024.10.23.
"딥페이크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95% 이상... 혐의 입증시 형사처벌" ⁶⁾	중부일보	2024.10.22.
올해 인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24명 검거...1명 빼고 모두 청소년 ⁷⁾	조선일보	2024.10.22.
동창·교사 얼굴 딥페이크 만들어 판매한 교고생 재판행 ⁸⁾	경기일보	2024.10.16.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10대 피의자' 381명...촉법도 71명	국민일보	2024.10.16.
10대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해 4억 채긴 20대 '징역 7년' ⁹⁾	한국일보	2024.10.12.
'딥페이크' 가해자 83%가 10대...청소년 성범죄 5년 새 70% 늘어 ¹⁰⁾	동아일보	2024.10.10.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명 중 1명은 '촉법소년' ¹¹⁾	세계일보	2024.9.27.

기사 제목	일간지명	보도일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2명이 촉법소년 ¹²⁾	국민일보	2024.9.26.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812건...피의자 84%가 10대 ¹³⁾	강원도민일보	2024.9.26.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83%...경찰 단속 이후 적발 건수 7배 늘어 ¹⁴⁾	경향신문	2024.9.26.
“혹시 우리 아이도?” 청소년 피해자 22배 폭증한 이 범죄 ¹⁵⁾	한국일보	2024.10.30.

언론 기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표현되다 보니, 자연스레 10대 청소년이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주범으로 이해되고, 이에 청소년에 대한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와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 인하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딥페이크의 다수 피해자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별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최근 4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1,339명 중 22,997건인 73.38%가 여성이었고, 이 중 10대·20대 미만이 58.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피해자 10대 현황: 2021년 1,194명, 2022년 1,211명, 2023년 1,848명, 2024년 6월까지 1,621명).¹⁶⁾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 2) 인천일보, “인천교사노조...딥페이크 성범죄 엄벌해야”, 2024.10.2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9469>)
- 3) 한겨레, “미성년 ‘딥페이크 범죄’ 성인의 2배...사건도 3배 급증”, 2024.10.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879.html)
- 4) 한겨레, “교사 노조 “인천 딥페이크 가해자 96%가 청소년” 엄벌 촉구“, 2024.10.29.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4841.html>)
- 5) 매일신문,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기승...대학생 이어 하다하다 중딩까지”, 2024.10.26.
(<https://www.imaail.com/page/view/2024102617181388921>)
- 6) 중부일보, “딥페이크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95% 이상... 혐의 입증시 형사처벌”, 2024.10.22.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5511>)
- 7) 조선일보, “올해 인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24명 검거...1명 빼고 모두 청소년”, 2024.10.22.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10/22/4HNDNPYLCJGU3PWQA6KSTAT3XE/?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8) 경기일보, “동창·교사 얼굴 딥페이크 만들어 판매한 고교생 재판행”, 2024.10.16.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6580278>)
- 9) 한국일보, “10대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해 4억 채긴 20대 ‘징역 7년’”, 2024.10.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215140003561>)
- 10) 동아일보, “‘딥페이크’ 가해자 83%가 10대...청소년 성범죄 5년 새 70% 늘어”, 2024.10.1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10/130189169/1>)
- 11) 세계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명 중 1명은 ‘촉법소년’”, 2024.9.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27513881>)
- 12) 국민일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2명이 촉법소년”, 2024.9.2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65231&code=61121211&cp=kd>)
- 13) 강원도민일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812건...피의자 84%가 10대”, 2024.9.26.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7417>)
- 14) 경향신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83%...경찰 단속 이후 적발 건수 7배 늘어”, 2024.9.2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261342001>)
- 15) 한국일보, “혹시 우리 아이도? 청소년 피해자 22배 폭증한 이 범죄”, 2024.10.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3013430003517>)
- 16) 한창민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 심화시켜”, 2024.10.7.
(<https://blog.naver.com/hancmdj/223610153589>)

딤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 미성년자였다.¹⁷⁾

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연령 인하, 처벌 강화 논의가 이번 딤페이크 대책에도 적합한 것인가를 반문하고 싶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딤페이크 등으로 행위 태양이 진화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대책은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로 그 답이 항상 똑같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다. 정부의 대응정책

1) 경찰의 대응정책

경찰은 딤페이크 범죄에 대해 이번에도 특별단속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¹⁸⁾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딤페이크 사건 964건을 접수하였는데, 집중단속 이전은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445건(일평균 1.85건)이 접수되었고, 시행 후인 8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519건(일평균 8.8건)이 접수되었다.¹⁹⁾ 서울경찰청에는 사이버수사대 내에 TF를 조직하여 딤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통해 입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경찰의 대응을 보면, 신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 특별단속에 들어가고 어느새 이전 범죄는 사라지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청소년 딤페이크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긴급스쿨벨’을 발령하였다. 서울지역 초중고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가정통신문과 휴대전화 앱으로 범죄를 알리는 시스템인 스쿨벨을 발령하였다. 청소년 도박 이어서 두 번째인데, 도박 때에도 처벌된다는 내용 위주의 안내였던 것과 비교하면 달리진 것이 별로 없다.

17) 동아일보, “딤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2024.8.3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830/126774340/1>)

18) 뉴시스, “딤페이크 범죄 처벌강화...범죄수익도 몰수”, 2024년 11월 6일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9120).

19) 경찰청, “딤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2024.11.1.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41101183509350&q_tab=&q_searchKeyTy=sj__1002&q_searchVal=%EB%94%A5%ED%8E%98%EC%9D%B4%ED%81%AC&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그림 3〉 서울경찰청의 긴급스쿨벨 포스터

2) 법무부의 대응정책

2024년 10월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에서 변화가 있었다. 허위 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죄와 법정형이 같도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4조의2).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었다(제14조의3).

2024년 11월 6일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강화 방안」에서도 정부는 위장-비공개 수사 실시,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강화,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및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피해자보호를 위한 삭제지원 강화 대책 등을 내놓았다.²⁰⁾ 그러나 정부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대책 대부분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대책에서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부 책이 수사 및 처벌 강화 위주 대책들이 대부분이라, 청소년이 딥페이크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이렇다 할 적용가능한 대책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20)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 합동대책 발표”, 2024.11.6.
 (<https://www.yna.co.kr/view/PYH20241106151700013?input=1196m>)

3) 교육부의 대응정책

정부의 대책은 변화가 없지만, 학교 현장의 공포는 심화되어 있다.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를 촬영하여 불법합성물을 만든 학생²¹⁾이 있는가 하면, 졸업앨범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학생들²²⁾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4년 8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안 불법합성물(딤페이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492건이 신고되었는데, 이 중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되었다.²³⁾ 딤페이크로 인한 공포가 심화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에 개인 사진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였고, 학교 교사들은 졸업앨범이나 학교 일상사진이 딤페이크에 활용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²⁴⁾

이에 교육부가 <학교 딤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누적사건 434건, 피해자 617명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의뢰한 건수는 350건에 이르렀으며, 실제 삭제지원까지 연계된 건수는 184건이었다. 피해 신고가 발표되었지만, 이후 교육부는 딤페이크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아직까지 내려보내고 있지 않다.

〈표 3〉학교 허위합성물(딤페이크) 피해 현황²⁵⁾

(단위: 건, 명)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등
누적 합계 (1.1.~9.6.)	434	12	179	243	350	11	151	188	184	617	588	27	2
1차 조사 (8.27. 기준)	196	8	109	79	179	7	96	76	97	196	186	10	0
2차 조사 (9.6. 기준)	238	4	70	164	171	4	55	112	87	421	402	17	2

21) 한겨레, “교사 사진 직접 찍어 ‘딤페이크’ 만든 학생, ‘불법 촬영’도 처벌받을까?”, 2024.10.30.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5065.html>)

22) 헤럴드 경제, ““엄벌 원했지만” 중학생 집단 딤페이크 제작에 고작 ‘학내봉사’…피해자 방치 교육당국”, 2024.8.2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63095>)

23) 전교조, “학교 딤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2024.08.29.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8>)

24) 한국일보, “졸업 앨범에서 사진 뺐으면...” 딤페이크에 떠는 교사 10명 중 9명”, 2024.10.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613570000145>)

25)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학교 딤페이크 성범죄 2차 피해 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2024.9.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9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3. 청소년 딥페이크의 원인과 배경

딥페이크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청소년이 왜 딥페이크에 빠지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청소년의 교육환경이 디지털 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아이들에게 디지털 미디어의 유혹은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미디어가 청소년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디지털 신기술이 일상화된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기회가 많다.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고, 학교 외 시간에 교사의 지도나 정보전달은 대부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요즘 학교에서는 코딩이나 파이썬 등 다양한 AI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 후에 학원이나 집에서 하는 학습 역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학습이 대부분이다. 학원에서 주는 숙제 역시, 선생님이 첨삭하는 형태가 아니라 AI가 첨삭지도 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에 더해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하루 평균 3~5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놀이나 게임, 정보 수집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상이 되고 있다.

나. 딥페이크 활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접근의 용이성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시간이 많아지면 온라인상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볼 기회도 늘어가게 된다. 요즘 구글 스토어 등에 들어가면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영상물을 합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튜브 등 채널에서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세밀한 합성을 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하는 영상들이 널려 있다. 처음에 아이들은 호기심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 속에 나를 합성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지만, 조금 더 자극적인 재미를 찾아가다 보면 온라인에 떠도는 누군가의 사진과 정보, 학교 친구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여 볼

26)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4, 8면.

법합성물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제작,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온라인에 열려 있다.

다. 또래들의 놀이문화, 장난으로 인식

요즘 청소년들은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법은 알고 있으나,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내가 손쉽게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법만 익히다 보니,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불법 이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아이가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알기 전에 스마트폰을 쥐어 주고, 디지털 학습을 한다며 노트북을 주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접근하는 디지털 기기는 아이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범죄 노출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초상권이 무엇이고,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 없이 일단 이용방법부터 익히다 보니, 우리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매우 친숙하면서도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 기기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다.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 연예인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넣는 재미나 장난행위로 시작하다, 친구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사진들과 합성하며, 평소에 친하지 않은 친구의 사진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합성 유포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사이버폭력은 일회적으로 지나가듯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는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및 유포를 하는 가해 청소년의 대부분이 ‘장난으로’, ‘재미로’라고 응답하였다.²⁷⁾

라. 학업 스트레스의 도피처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나아가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다.²⁸⁾ 청소년의 입시경쟁 부담을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고, 청소년의 비행이나 사이버폭

27) 홍세은/전영실/이승현,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및 효율적 점검·관리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 185면

28) 김현희,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김종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학회 제9권 제1호, 2013; 명향란,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2019.

력과도 연결된다고 보았다.²⁹⁾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보고서의 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8.8%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4.6%p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⁰⁾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이 보다 자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것이 딥페이크와 같은 폭력 행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마. ‘좋아요’에 집착하는 세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게시하는 것을 즐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누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³¹⁾ 댓글이 많거나 좋아요가 많으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더 많은 게시물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좋아요’가 더 많이 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보다 ‘좋아요’가 많은 것이 청소년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래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놀이로 SNS를 활용하고, ‘나 이 정도로 정교하게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좋아요’를 받는 것을 바라는 청소년은 게시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도용한다는 생각보다 ‘좋아요’를 받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바. 범죄에 노출된 환경(어른들의 범죄도구로 활용)

청소년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온라인 환경 속에 있고, 범죄집단의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 불법업자들은 청소년 한 명을 유인하면 그 청소년이 수많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모객 행위를 할 수 있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액의 포인트 지급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쉽게 유인된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법업자가 딥페이크를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메시지만 보내면 순식간에 엄청난 수의 청소년이 모여들고, 청소년들이 더 많

29) 김도희, 박영준, 장재원, “청소년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제37호, 2017; 김진숙, 문현주, “학업스트레스, 학교분위기, 가족의 의사소통과 학교폭력 가·피해와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제14권 제1호, 2016.

30) 통계청 통계개발원,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2022, 2022, 41면.

31) 배상률 외,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II): 10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6~17면.

은 포인트를 받기 위해 친구의 개인정보가 든 불법합성물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한다.

청소년 도박에서는 아이들이 도박을 중단하려고 할 때 포인트를 주거나 성관련 불법합성물을 보여주면서 온라인 도박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마약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의지로 마약을 중단하려고 하면 업자가 자극적인 불법합성물을 대량 유포하여 그것으로 돈을 벌게 하여 결국 마약을 다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딥페이크에서는 청소년이 불법합성물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조직의 중간책·홍보책이 되기도 하고, 다른 청소년들을 유인해오거나 홍보하는 건수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활용하고도 있다. 어른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청소년을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청소년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4. 청소년 딥페이크의 대응 방향

딥페이크는 청소년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처벌이 아닌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할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계속 생성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진을 합성해서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다른 기술과 만나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 대신에 청소년이 스스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하는 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년범죄에 대응하는 시선도 달라져야 하고, 범죄 시장에서 청소년을 유혹하는 구조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

딥페이크를 비롯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매년 발생할 때마다 폭력의 중대성만 언급되면서 처벌 강화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역시 정부의 긴급대책이라고 나온 것은 집중단속 강화, 법정형 강화로 엄벌, 촉법소년 연령 인하였다. 매년 청소년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언제나 답은 같았다. 이번에도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 개인의 일탈과 책임으로 치부되고

처벌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의 50%가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수위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³²⁾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22.3%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내가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처벌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나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청소년의 규범의식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에게 개인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를 인식시키는 법교육이나 선도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다.

나. 수사 태도와 방식의 변화

새로운 범죄 태양이 나타나면 경찰은 항상 특별단속으로 일시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다른 범죄가 더 부각되면 이전의 범죄유형은 또다시 사라지게 된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항시 개입해야 한다.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도록 경찰이 일상화된 수사 분위기를 만드는 것 필요하다.

온라인 행위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 수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딥페이크 신고를 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범인 잡기 어려워요”라는 답을 듣고 이미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좌절감은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가 지속될까봐 불안 속에 지내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상 범죄라 할지라도 신고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방식 변화

학교에서 하는 딥페이크 관련 교육 내용을 보면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라는 교육 위주이다. 이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반응답자의 97.6%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³⁴⁾, 청소년의 50% 이상이 사

32) 홍세은/전영실/이승현,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및 효율적 점검·관리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 185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4.2, 71면.

3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3.

34)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18, 9면.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수위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³⁵⁾ 실제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90.1%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했고, 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³⁶⁾ 그렇다면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처벌 규정을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교육내용이 아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됩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교육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백번 해도 소용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진정 필요한 교육은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초상권,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사회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감 교육을 통해 피해·가해 사례를 접하고 체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내가 하는 ‘재미’ 또는 ‘장난’이라는 작은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공감하는 교육을 해야 하고, 이 교육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이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만큼 사이버폭력이 그리 문제시되지 않지만, 문부과학성에서 정보모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예방교육지도안을 개발하여 정보기기의 접근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³⁷⁾ 영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유해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존중하는 관계교육(respectful relational education)”을 통해 학생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³⁸⁾

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외국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정보들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인 규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를 범죄와 공모 또는 방조행위로 보아 대응하고 있

35) 방송통신위원회,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4, 71면.

36)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4, 69면.

37) 홍세은, 전영실, 이승현,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및 효율적 점검·관리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 84면 이하.

38) 홍세은, 전영실, 이승현,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및 효율적 점검·관리방안 연구,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4, 88~102면.

다. 2022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텔레그램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에 협조하지 않자 통신업체에게 브라질 전역에서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프랑스는 온라인 성범죄, 마약 거래 등의 행위를 공모, 방조했다는 혐의로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하기도 하였다.³⁹⁾ 미국은 딥페이크 기술규제에 적극적이어서 2024년 11월 딥페이크 생산과 배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EU도 딥페이크 기술 규제에 강경한 입장이다. EU는 AI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한 AI 시스템을 규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자정 행동에 나서고 있다.⁴⁰⁾ Meta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AI 영상 게시를 중단하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AI 생성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라벨을 지정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노력을 하였고, 2023년 말부터 광고주에게 딥페이크 광고를 공개하도록 하며,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적절하지 않은 광고 43만 개를 삭제하였다.⁴¹⁾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29건을 삭제 요청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삭제 지원 건수는 훨씬 많지만 플랫폼 업체가 대부분 외국에 있고 고객 정보보호를 이유로 삭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청소년만 처벌해서는 청소년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사업자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삭제 지원 요구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도 강력하게 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 미디어 활용 전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 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접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소년이 어떠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9) 놀이문화처럼 번져...딥페이크 성범죄 왜 유독 청소년들 많았나?

40) 법률신문, “EU, 세계 첫 AI규제법 2026년 시행 확정”, 2024.11.17.
(<https://www.lawtimes.co.kr/news/198482>)

41) 글로벌 ICT 포털, “미국·EU 딥페이크 규제 강화”, 글로벌 ICT 주간동향 리포트 2023년 3월 2주차
(<https://www.globalict.kr/news/trend/weekly.do?menuCode=020200&knwidNo=143738>)

핵심은 비판적 분석과 이용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그나마 받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네티켓이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인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의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은 매우 적었다. 고등학생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⁴²⁾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이 정보의 사실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법촬영이 핫이슈였으나 현재는 딥페이크가 문제되고 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사이버범죄가 문제가 될지 우리는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아이들이 접근하는 범죄의 태양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매번 처벌되니 하지 마라라는 교육만 되풀이 하다보면 청소년의 범죄에 항상 뒤따라가는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범죄에 근본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가려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미디어에 익숙한 다음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기 전 반드시 사전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갖추고 난 다음 디지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청소년 딥페이크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변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청소년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은 그 범죄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범죄 행위가 과도하게 상세하게 묘사되곤 한다. 이로 인해 피해 청소년은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가해 청소년 역시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딥페이크가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사적 제재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언론의 정보전달과 보도자세는 청소년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소년사법에서는 가해청소년일지라도 품행 교정과 환경 조정을 통해 건전한

42) 배상률 외,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II): 10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6~17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소년보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한 심리를 공개하지 않고(소년법 제24조 제2항), 조사 및 심리 단계에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보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68조). 그러나 이 원칙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시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언론사가 지침을 준수하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기자협회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과 실천요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호(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도 한다.⁴³⁾ 그러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가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언론사도 청소년 딥페이크 형태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 청소년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에 환경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도록 해야 한다. 가해소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유도하는 보도가 아닌 선도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43)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https://www.pac.or.kr/kor/pages/?p=12>)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문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봉섭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

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강미정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36.9%는 미성년이다,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점점 어려워져 2023년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청소년보호팀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지난 해 피해지원의 24.6%는 10대이고,²⁾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라고 한다.³⁾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80%라고 보고된다.⁴⁾ 발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라인 환경을 만든 산업의 구조 안에서 아동 청소년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익명의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은 왜곡된 놀이 문화로서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면 그 공간에서의 아동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오늘날의 아동 청소년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는 모호하다. 겹겹이 이어진 세계에서 아이들은 온라인 속 평판을 관리하며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통하여 친구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위험은 복합적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방관자, 공모자, 가담자, 피해자는 단편적이지 않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의 부추김으로 방관자는 가해자로 돌아서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험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경험 탐색 연구에 따르면,⁵⁾ 아

- 1) 한겨레(2024.09.02.).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요청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 인용
-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3) 세이브더칠드런 나눔이야기(2024). [레드레터] 3화: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성착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 보호팀 김효정팀장. <https://www.sc.or.kr/news/storyView.do?NO=72431>
- 4) 동아일보(2024.10.10.). [단독] ‘딥페이크’ 가해자 83%가 10대·청소년 성범죄 5년 새 70% 늘어 | 동아일보. 이견태 의원실 경찰청 제출자료 인용
- 5) 김아미·세이브더칠드런(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경험 탐색 연구.

동 청소년은 피해와 가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프라인 상황에 비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향력이 높은 또래 문화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 상황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범죄나 권리 침해가 아닌 일시적인 일탈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의 온라인 경험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문화·사회적인 자원'에 따라 다르다.⁶⁾ 지난 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⁷⁾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아동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대부분의 위험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를 주변의 어른들과 상의하기 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오프라인에서의 취약성이 온라인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험에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아동의 잊힐 권리

교육부의 학교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 올해 피해신고 434건 중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이다.⁸⁾ 전체 피해의 42.4%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보다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게시되면 복제나 유포를 막기 어려운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 상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개인정보 등이 악용되는 경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은 위태로워진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끔찍한 상처와 고통, 트라우마를 남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1)

70. 당사국은 모든 기관이 아동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법 사항에는 강력한 보호조치, 투명성, 독립적 감독, 구체적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설계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을 의무화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생활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절차와 관행을 통해 아동의 사생활이 고의로 침해당하거나 우발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암호화가 적절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당사국은 아동 성착취와 성학대 혹은 아동 성학대물을 적발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6) 김아미(2022).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7) 유조안·오수미(202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삶의 질 현황. 2023 디지털 환경과 아동 삶의 질 국제심포지엄. 세이브더칠드런.

8) 교육부 보도자료(2024.09.09.) [보도참고자료]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 소식 > 보도·설명·반박 > 보도자료

72. 당사국은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저장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수정하며,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기타 단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불필요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합당하고 합법적인 제약 하에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관리자가 처리를 위한 타당한 핵심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자신의 동의를 철회하고 개인데이터 처리를 반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련해 당사국은 또한 아동, 부모, 보호자에게 아동 친화적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가가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아동이 자신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에 있어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개인정보위원회 지우개 서비스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른 정보의 삭제나 반박의 게재 요구,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자의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하나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 크다. 특히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유된 경우 이를 삭제하기 어려우며, 링크, 사본, 복제물 등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 또한 미비하다.

세이프더칠드런은 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디지털로 변경된 이미지를 포함한 아동의 개인 식별 정보(이미지 및 기타 데이터 포함)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2026년 4월부터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에게 디지털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아동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정보에 기초한 아동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사례 중 개인정보가 동반되어 유출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5.7%에서 2023년 23.3%이다.¹⁰⁾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또한 아동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학교, 주소 등과 함께 유포되어 그 피해는 더 깊고 지속적이다. 이에 행위 주체와 위험을 모두 포괄한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가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장의 관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 유인의 위험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에 있어 아동

9)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과 통보, 삭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간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

202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발표한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작성하는데 전세계 28개국 709명의 아동들이 국제적 논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때 50%의 아동들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202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조사’에서도 아동들의 90%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 수집에 동의했다고 답했지만, 절반 이상인 53.1%는 개인 데이터가 마케팅 목적으로 외부 회사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에는 약관을 이용하여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성적으로 편집 및 복제하여 성착취물을 구매나 판매하도록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발제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착취 관련 학교 현장의 대응은 처벌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교육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고 계정을 비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 수준에 그쳤다. 이번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면,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시민성 교육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행동 지침도 보다 세부적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 조성 및 교육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보다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디지털 공간에의 다양한 경험에 귀 기울일 때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는 보장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 위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에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안내하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에서 위험 상황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은 대개 개별적으로 가해자를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보호자나 교사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¹¹⁾ 한편, 우리 법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라는 특성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미비하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예방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부모 동의 조건이 면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아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서 아동이 제대로 상담 정보를 얻거나 보호조치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기도 한다.

나가며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물은 아동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아동 청소년 모두 제대로 된 책임과 존중, 보호를 동시에 배우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가도록 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과 관행이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2년에 도입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아동권리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화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아동권리 보호의 책무¹²⁾가 제대로 이행될 때 아동들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며 성장할 것이다.

11) 김아미·세이브더칠드런(2021). 아동·청소년 디지털 플랫폼 경험 탐색 연구.

12) 2012년 세이브더칠드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유니세프는 기업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로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자기 보호 활동 방안

김봉섭 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

제2회 아동권리 주간 기념 토론회

아동 권리 측면에서 본 딥페이크 폭력 현상과 대응 방향

2024. 11. 26(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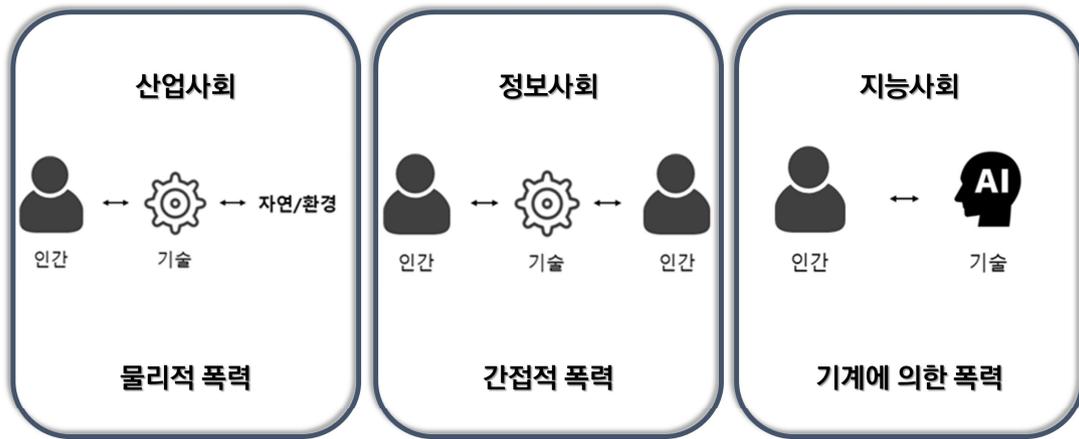
김 봉 섭

연구위원(언론학 박사)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Powered 온라인 위험

기계에 의한 온라인 위험 가능성



AI Powered 온라인 위험

MENU Q SEARCH

EducationWeek

2023년 미국 하원 틱톡 CEO Shou Chew 청문회

LEADERSHIP POLICY & POLITICS TEACHING & LEARNING TECHNOLOGY OPINION

ED-TECH POLICY

Congress Tells TikTok CEO: The App Is Bad for Students and Privacy



By Alyson Klein — March 23, 2023 3 min read

계정을 만든 지 수 분내에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에게 자살, 자해, 섭식 장애 등을 조장한다.



<https://www.edweek.org/technology/congress-tells-tiktok-ceo-the-app-is-bad-for-students-and-privacy/2023/03>

AI Powered 온라인 위험

Tay



2016년 4월

MicroSoft

Twitter

16시간 만에 서비스 종료

Xiaoice



2014년

MicroSoft

Weibo

현재도 서비스 중

AI Powered 온라인 위험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



최에나 기자
정책사회부

구독 34

추천 4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캡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습니다.

+ 구독



여근호 기자
정책사회부

구독 22

추천 6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딥페이크 나를 노린다]

중 100명-고 78명 성범죄 피해신고
교사 10명중 9명은 현직 중등교사
"교단 떠날까 고민" 두려움에 떨어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가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8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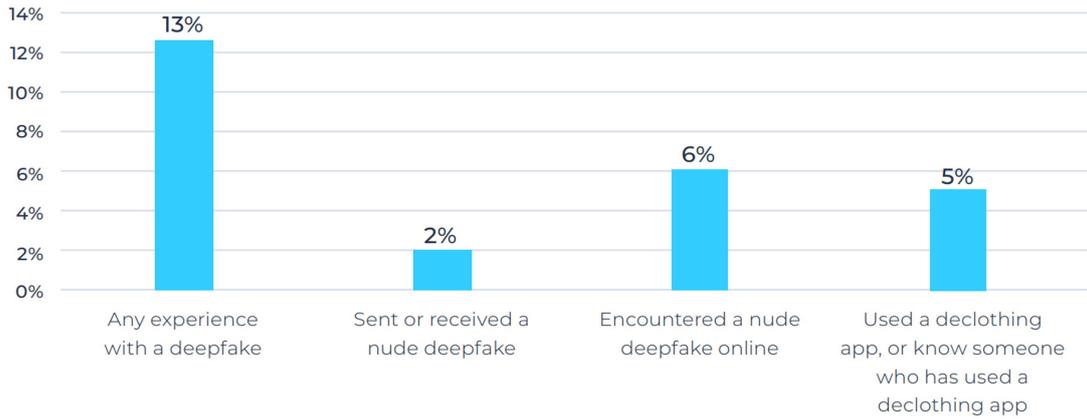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 등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중학교 현직 교사였다. 교육부는 이 중 179명의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도 나타나는 만큼 교권 침해의 한 유형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법에 성폭력 범죄와 영상 무단 합성 배포가

AI Powered 온라인 위험

Figure 7. Teenagers' experiences with nude deepfakes.



출처 : The new face of digital abuse(2024. 10) intermatters.org

AI Powered 온라인 위험

METRO

NEWS... BUT NOT AS YOU KNOW IT

NEWS SPORT ENTERTAINMENT SOAPS LIFESTYLE VIDEO SHOPPING MORE

UK LONDON POLITICS US WORLD CRIME TECH SCIENCE WEIRD

Home > News > UK

Girl killed herself when bullies shared fake nudes of her

Sarah Hooper
Published Jun 24, 2024, 3:26pm | Updated Jun 24, 2024, 6:46pm



Comment



Mia was just 14 when she took her own life from bullying (Picture: PA)

Boys at the same school as a 14-year-old girl who killed herself had used a group chat to make fun of other girls, an inquest has heard.

Advertisement
Ads by Google

Stop seeing this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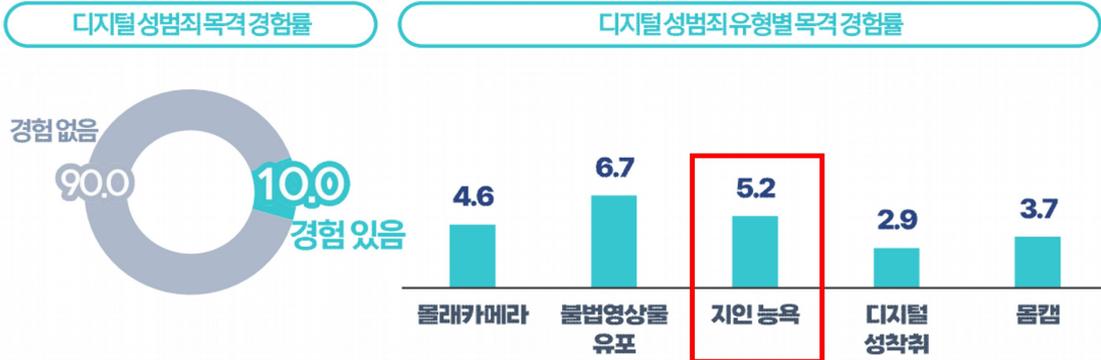
Why this ad? ⌵

METRO is on WhatsApp!

Follow our channel to get the news you want delivered.

AI Powered 온라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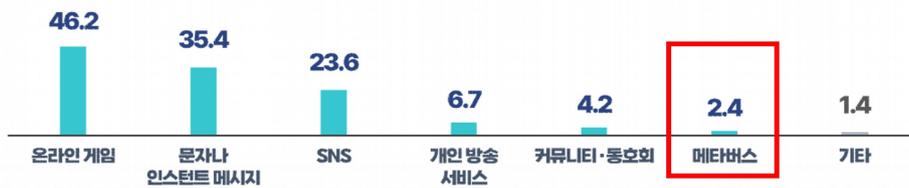
ㅣ 딥페이크 유형(지인능욕) 목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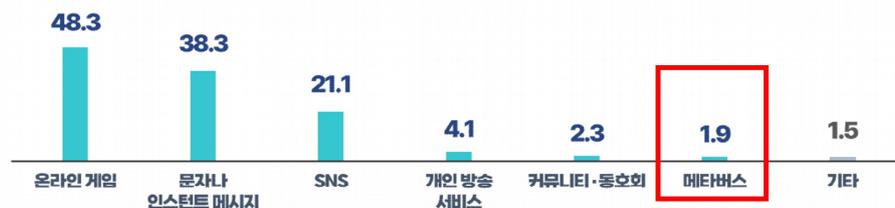
출처 :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새로운 온라인 위험 발생 공간의 등장

ㅣ 사이버폭력 피해 경로



ㅣ 사이버폭력 가해 경로



출처 :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오프 라벨



OFF LABEL

의약품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적응증, 용량, 투여경로 중 어느 하나라도 허가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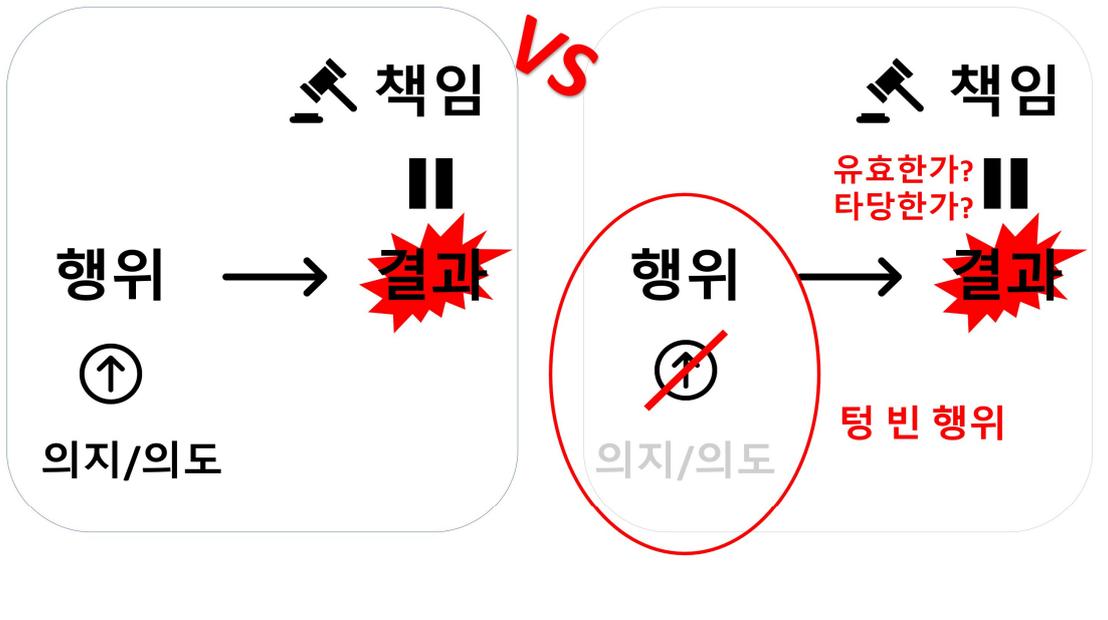
온라인 위험 행동의 의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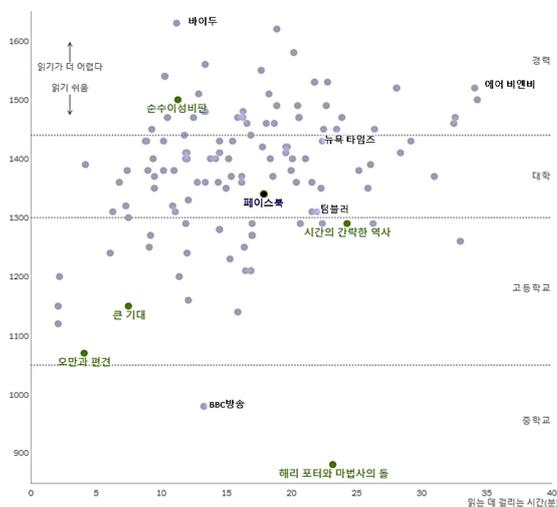
- 온라인 위험 행동은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어 판단 어려움
- 딥페이크 폭력을 포함한 온라인 위험 행동은 항상 범죄, 비행, 장난 중 그 어딘가에 해당

온라인 위험 행동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 딜레마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권리 보호 취약점

150개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과 내용의 어려움 비교



출처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6/12/opinion/facebook-google-privacy-policie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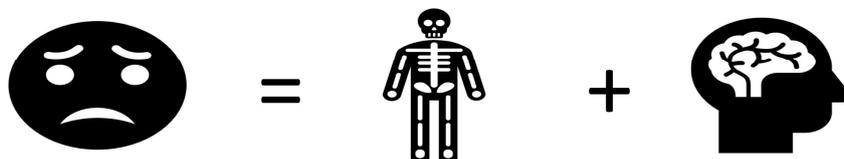
딥페이크 폭력에 대한 시선 하나



세계보건기구(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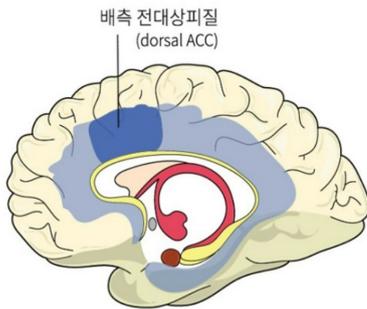
폭력 = '우선적인 공중보건 문제'

딥페이크 폭력은 공중보건 문제



고통 = 신체 감각 +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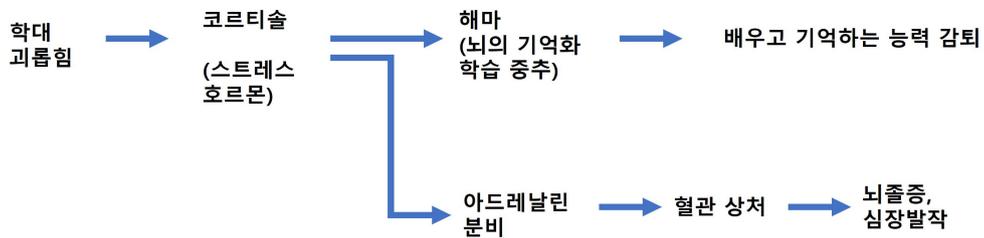
딤페이크 폭력은 공중보건 문제



“ 따돌림(소외, 무시) 당하는 것은 신체적 고통과 관련한 뇌의 부위와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 시킨다. ”

(Eisenberg, Liberman, & Williams, 2003)

딤페이크 폭력은 공중보건 문제



딥페이크 폭력에 대한 시선 들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29조 1호 1항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아동권리협약의 특정 조항 또는 주제를 해석하여 협약의 이행을 돕기 위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

일반논평 1호(2001) 교육의 목적
일반논평 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일반논평 25호(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딥페이크 폭력으로 인한 권리침해 요소

[첫째]

딥페이크 폭력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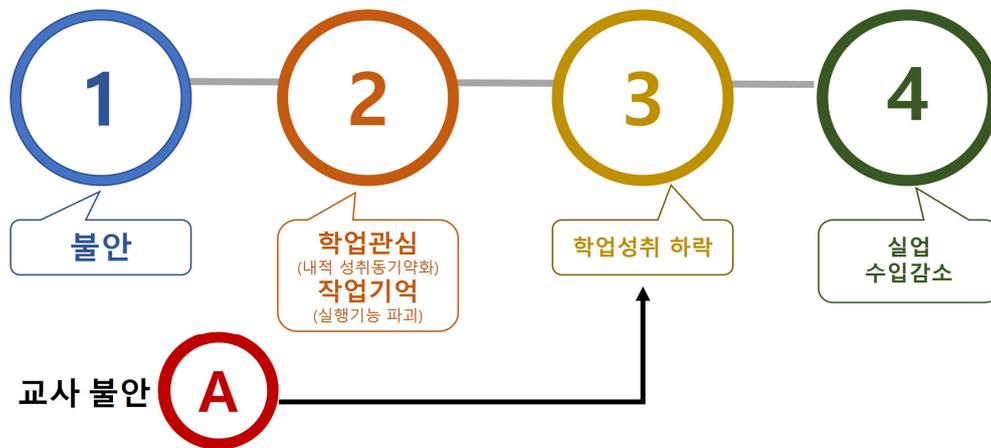
교육의 주요 목적

모든 아동이 고유의 특성, 관심사항, 능력 및 학습적 필요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개별 아동의 성격, 재능 및 능력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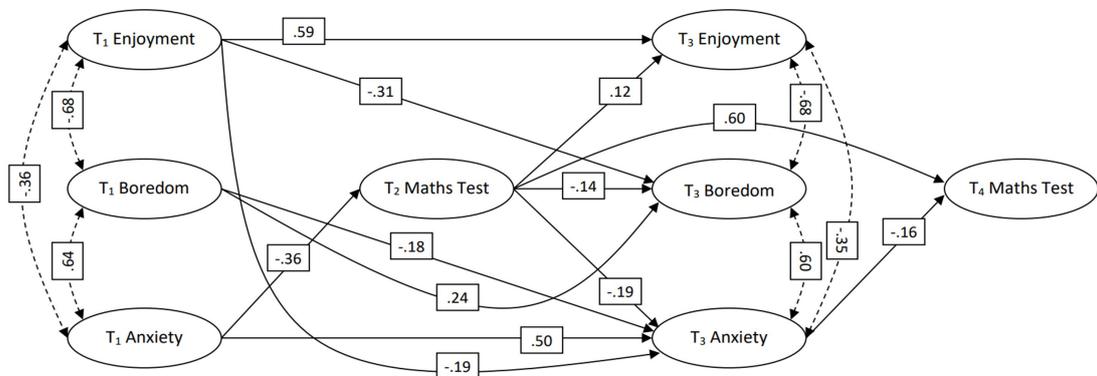
딥페이크 폭력으로 인한 권리침해 요소

청소년 불안 원인 (Davey 2018)

the use of social media
increased exposure to violence
 trauma
 conflict
 excessive pressure to succeed at school



딥페이크 폭력으로 인한 권리침해 요소



Putwain, D. W., Wood, P., & Pekrun, R. (2022). Achievement emo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Reciprocal relations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academic buoyanc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4*(1), 108–126.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권리침해 요소

[둘째]

딥페이크 폭력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절대적 권리(협약 19조)를 침해하는 행위



폭력은 개인적이고,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는 청소년의 능력을 제한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박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딥페이크 폭력으로 인한 권리침해 요소

[셋째]

딥페이크 폭력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당사국은 사이버폭력, 디지털 기술 배제 및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와 학대 등이 위협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러한 범죄를 조사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책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딤페이크 폭력 대응 방향



“아동폭력에 대한 고압적 또는 무관용(zero tolerance) 국가 정책은 폭력에 대해 더 많은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아동을 희생시키는 처벌적 접근법”

출처: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제15항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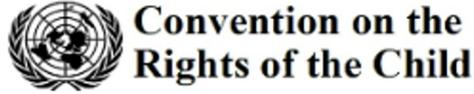
**#예방 #회복적 정의 #관계 개선 #親사회적 기술 함양
#권리 의식**

회복적 정의

처벌적 정의	회복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중심 • 비행을 처벌하는 대신에, 어떤 해가 발생했고, 그 해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지에 관심 • 피해를 일으킨 사람 뿐만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 이 두 당사자를 포함하는 공동체와 후원자들 • 가족 그룹 회의가 대표적인 사례 • 책임과 존경

- ① 회복적 실천 행위는 피해자 만족도 향상,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개선, 방관자 및 지지자의 참여라는 추가 혜택 제공
- ② 회복적 실천 행위는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 제공

딥페이크 폭력 대응 방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및 교육을 개발할 때,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출처: 아동권리위원회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5호(2021): D 아동 견해의 존중 17항

**#당사자 주의 #시청자위원회 참고 #청소년이용자위원회
#권리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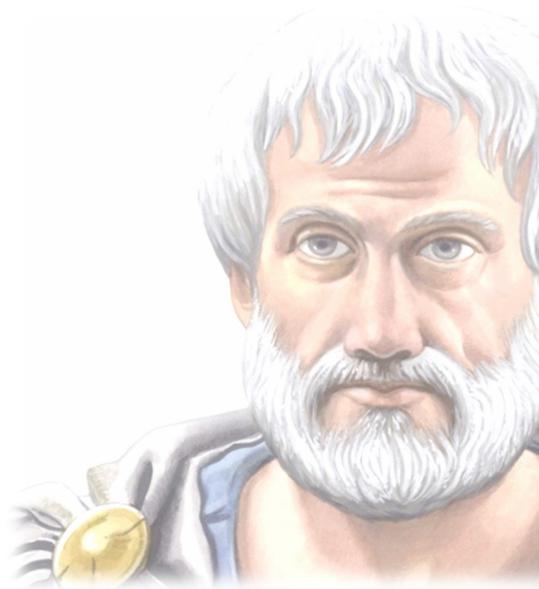
디지털 시민성 함양

“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미래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현재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 ”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 이용과 관련해서 적절하고 책임있는 행동 규범을 의미

실천적 지혜



보편적인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이론적 지혜(sopia)와 달리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사유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반성하는 능력(phronesis)

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

실천적 지혜는 실천 속에서 획득한 지혜로 탁월한 행동을 위해서는 지식 뿐만 아니라 경험이 반드시 필요

예를 들어 의사는 환자의 치료 여부가 아니라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어떤 치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숙고

이카루스의 교훈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의 왕 미노스에 의해 리비린토스 미궁에 갇힌 다이달로스와 아들 이카루스는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인 인조 날개를 만들어 미궁을 탈출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태양에 너무 가깝게 날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이카루스는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충고를 무시한 이카루스는 인조 날개의 밀납이 녹으면서 깃털이 산산이 흩어져 추락합니다.

의미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악용하면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보임

결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의지가 중요

● ● ● ● ●
감사합니다!

디지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고유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2,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행동 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주제로는 사이버불링, 디지털 성추행 및 범죄, 디지털 자해, 온라인도박, 온라인 불법약물 거래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태와 관련 문제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 청소년의 30%는 최근 6개월간 온라인상에서 야한 농담이나 이야기(섹드립)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48%는 이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음란물이나 야한 노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경험은 4.6%,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야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경험은 2.2%로 나타남.
-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채팅방에 초대받은 경험은 7.4%,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이나 채팅방에 공유된 경험은 7%로 달함.
-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해 경험 비율은 14.5%이며, 피해 경험은 13%로 조사됨.
- 불법약물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본 경험은 7.8%, 외모 개선을 위해 불법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임.
- 온라인 카드·화투 게임 경험은 6.3%, 인터넷 내기 방송 참여는 4.7%, 복권이나 스포츠 베팅 경험은 2.8%임.
-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자해 경험이 있으며, '자해계'나 '자해방법'을 검색한 비율은 6.1%, 관련 카페·채팅방 이용은 2.4%, 자해 후 사진이나 게시글을 올린 경험은 1.9%임.
- 오프라인 일탈행동과 온라인 위험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
- 스마트폰 과의존성, 또래동조성, 부모의 관심 수준, 정보보안 활동 등이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불링 등 온라인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면접조사 결과>

- 청소년들은 유해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음.
-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가 드러났음.
- 사이버불링, 성추행 등 온라인 위험행동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 등 어른에게 유해환경 노출 경험을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임.
- 온라인 위험행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부모의 적절한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큰 경각심 없이 위험행동에 노출되고 있음.

출처: 배상률 외(2023).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발제자이신 이승현 박사님이 강조하신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 방식 변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깊이 공감한다. 이는 토론자가 2023년 수행한 연구에서 제안한 4대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유해 콘텐츠 필터링 및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과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의미하며,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고 한다.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과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understand) 및 비판적 분석(critically evaluate)에서 접근(access), 창작(create), 협업(collaborate), 참여(participate)로 확장되었고,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교육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미디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이는 디지털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의 권리 침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1> 기술 발달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확장

중심 기술변화	영상	⇒	인터넷	⇒	ICBM*, AI * lot, Cloud, Big data, Mobile
미디어 생산 주체	소수		다수		모두(1인 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이해능력	+	접근·생산·참여능력	+	소통·협업능력, 시민성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08. 27).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가 지자체별로 잇달아 제정되었다. 국가 차원의 미디어 교육 관련 법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2007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총 8차례 이루어졌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법안에는 미디어 교육의 정의에 공통적으로 시민윤리의식 함양이 포함되었다.

〈표 2〉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안에 규정된 미디어 교육 정의

법안명(발의 연도)	대표발의	미디어 교육 정의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1)	권인숙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의식 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2)	정경희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소통 능력 및 시민윤리의식 을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교육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4)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권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과 자질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 교육은 단순히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prosumer)을 넘어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과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 능력,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디지털 공간의 안전과 보안 의식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역량을 포괄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은 기기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스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지와 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이나 사이버불링 같은 가해 행동이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단순한 강의식의 정보전달 방식이 아니라, 사례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핵심 주체인 교육자와 보호자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자와 교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특히, 부모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승현 박사님이 발제문에서 제기하신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뒷받침 또는 보완할 수 있는 2023년도의 중고등학생 대상 실태조사 통계 분석 결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표 3>은 외모 개선을 위한 불법약물 복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불법약물 복용에 대한 처벌을 인지할수록 복용 의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디지털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매체 이용 시간 중에서는 특히 SNS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불법약물 복용 의향이 높아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계발효과(cultivation effect)에 따른 것으로, SNS를 통해 왜곡된 외모의 미적 기준에 장기간 노출된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내면화하고, 외모 개선을 위해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는 타인의 얼굴을 야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섹드립 가해 경험, 음란물 타인 전송 경험, 성적 채팅방 초대 경험 등이 타인의 얼굴을 야한 사진 또는 영상에 합성한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능숙도가 높을수록 불법 합성물 제작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디지털 성범죄 처벌 적절성 인식 수준은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일탈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감능력(예: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이 낮을수록 불법 합성물 제작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조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네티켓 관련 교육과 기업의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을 다룬 교육이 불법 합성물 제작 경험을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의 윤리적 판단을 강화하거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실제 디지털 환경과 연계된 실질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 3〉 외모개선을 위한 불법약물 복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지트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exp(b)
성별	-0.231	0.193	0.794
학년	0.046	0.052	1.048
학업성적	-0.093	0.077	0.911
가구소득	0.239	0.104	1.270*
불법약물 복용경험	-1.531	0.912	0.216
불법약물 복용 지인	-0.700	0.482	0.497
불법약물 복용 처벌 인지	0.245	0.091	1.277**
유튜브 이용 시간	-0.134	0.051	0.874**
SNS 이용 시간	0.185	0.050	1.203***
메신저 이용 시간	-0.028	0.059	0.972
게임 이용 시간	-0.073	0.049	0.929
스마트폰 집착 경향성	0.091	0.129	1.096
자기존중감	-0.286	0.126	0.751*
도래동조성	0.474	0.125	0.622***
폭력허용도	0.372	0.109	1.451**
오프라인 일탈	0.392	0.157	1.480*
상수항	-0.405	1.231	0.667
모델	-2LL	1091.641	
	model X^2	100.171(16)***	
	Nagelkerke	0.108	
	분류정확도	91.7%	

p<0.05*, p<0.01**, p<0.001***

〈표 4〉 타인의 얼굴을 야한 사진 또는 영상에
합성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로지트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exp(b)
성별	-0.583	0.489	0.558
학년	0.029	0.122	1.030
학업성적	0.191	0.166	1.210
가구소득	0.263	0.212	1.301
섹드립 가해 경험	0.363	0.141	1.437**
음란물 타인 전송 경험	1.016	0.212	2.763***
성적 채팅방 초대받은 경험	0.490	0.230	1.633*
디지털기기 능숙도	-0.650	0.245	0.522**
스마트폰 집착 경향성	0.386	0.281	1.471
디지털 성범죄 처벌 적절성 인식	0.112	0.233	1.118
온라인 위법행위 강력 처벌 동의	-0.542	0.276	0.582*
윤리교육 및 시민의식 제고 노력 필요 동의	0.470	0.299	1.601
미디어/플랫폼 기업 책임 부과 동의	-0.515	0.272	0.597
미디어교육 경험 네티켓	0.437	0.683	1.548
미디어교육 경험 기업의 아동권리침해	-0.037	0.061	0.963
폭력허용도	-0.505	0.271	0.604
오프라인 일탈	0.889	0.287	2.434**
자기존중감	-0.144	0.295	0.866
공감능력	-0.532	0.216	0.588*
상수항	-3.871	1.846	0.021*
모델	-2LL	234.750	
	model X^2	168.453(19)***	
	Nagelkerke	0.441	
	분류정확도	98.0%	

p<0.05*, p<0.01**, p<0.001***

〈표 5〉는 스마트폰 집착 경향성, 부모의 긍정적 양육 수준 등 주요 변인의 응답 수준이 타인의 얼굴을 야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경험 빈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합성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집착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는 부모-자녀 관계성 제고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적극적 증재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방식이 합성 경험 빈도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섹드립을 들은 경험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 경험은 합성 경험 빈도가 높은 그룹(그룹 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디지털 범법자 강력 처벌의 필요성은 합성 경험이 없는 그룹(그룹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동의 수준은 합성 경험 빈도가 높은 그룹(그룹 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험이 없는 그룹(그룹 1)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타인의 얼굴 합성 경험 빈도별 주요 변인 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스마트폰 집착 경향성	부모의 긍정적 양육	부모의 적극적 중재	부모의 제한적 중재	섹드립 들은 경험
타인의 얼굴 합성 경험	그룹 1 (전혀 없음)	2.14 (.66)	3.31 (.62)	3.28 (1.12)	2.68 (1.15)	1.96 (1.321)
	그룹 2 (1~2회)	2.41 (.80)	2.91 (.77)	3.15 (1.19)	2.62 (1.27)	2.50 (1.56)
	그룹 3 (3회 이상)	2.65 (1.00)	2.65 (.84)	2.35 (1.46)	2.05 (1.47)	3.60 (1.64)
F		7.13**	16.51***	7.02**	2.96	17.17***

p<0.05*, p<0.01**, p<0.001***

		성폭력 피해자 책임	윤리교육 필요성 인식	디지털 범법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적절성	공감 능력
타인의 얼굴 합성 경험	그룹 1 (전혀 없음)	1.96 (.84)	3.14 (.81)	3.14 (.86)	1.90 (.76)	2.97 (.78)
	그룹 2 (1~2회)	1.88 (.82)	2.62 (1.13)	2.54 (1.10)	1.96 (.92)	2.54 (.95)
	그룹 3 (3회 이상)	2.65 (.88)	2.45 (.95)	2.05 (1.19)	2.45 (.95)	2.15 (.88)
F		6.86**	12.14***	21.32***	5.16**	14.44***

p<0.05*, p<0.01**, p<0.001***

아동·청소년 성교육 현황과 과제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과거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했습니다. 유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곳, 유해 업소 등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유해 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모든 게 연결되면서 집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발제 원고에 기술하신 것처럼 청소년은 디지털에서의 다양한 범죄 유혹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지다보니 나와 타인의 경계도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 공기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는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콘텐츠를 만나 익숙해지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성 표현물은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놀이로 여겨지기도 하고, 흥미와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인식되기도하고, 특히 여성의 몸을 인격으로 인식하기 보다, 성적인 감각, 쾌락, 놀이를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도구로 여기게 만드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성폭력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은 영상을 직접 만들고 유포하는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해석의 틀이 완성되기 전에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접하다 보니, 성적인 행동을 쉽게 상상하고 실천하는 연령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착취물을 생성해서 보내기도 하고,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 함께 성적 놀이를 하다 협박을 당하는 남자 청소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노예로 삼거나¹⁾²⁾, 협박하여 범

1) 10대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중앙정보부' 운영자는 고2였다, 중앙일보.(2020. 5. 13)
<https://v.daum.net/v/20200513125031715>

죄행위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발제 내용처럼 청소년들이 불법조직의 중간책이나 홍보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마약, 불법 사채 등 다른 범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성년자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피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피해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도 이러한 범죄가 확산되는데 일조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유해 혹은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은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차단을 목표로 했다가 점점 퍼지면서 핀셋 규제와 백신 접정으로 면역력 높이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유해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개입하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이 성적 침해 행동을 했을 경우,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한다는 점, 애초에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에 협력해야한다는 점, 그럼에도 100% 안전할 수 없기에 청소년들의 리터러시 능력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노력 등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다뤄야 할 주제는 많지만 저는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주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

성교육은 보건교과, 폭력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매년 15시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³⁾⁴⁾

더구나 2015년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발표하고 표준안에 있는대로 교육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학교 성교육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들을 강화

2) 텔레그램서 사진 합성 의뢰 중학생 협박당하다 신상 공개돼. 연합뉴스(2020.10.26.)
<https://v.daum.net/v/20201026163209315>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중학생 4,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학교 성교육(48.9%)과 인터넷(SNS, 유튜브 등, 22.5%)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일방적인 강의 방식'(34.7%)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34.4%)이 지적되었음.

4) 한국일보(2024.09.02.)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76%가 10대인데... 학교 성교육은 10년째 제자리
 (인출일 2024. 10. 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116050002859>

하여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17조 3항에 의해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2023년부터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지만 학교 성교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성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 교과는 필수교과가 아니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입시에 치중되어 성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2022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양성평등, 성교육 관련 성취기준이 범교과 교육으로 담겼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범교과 수업이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은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요한 방해입니다.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보건교과 등 성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성혁명 교육을 한다며, 보건교과서의 내용, 성교육 전문 기관의 교육 내용을 문제 삼아, 교육청, 지자체, 일선 학교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일부 시의원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핑계로 성교육 전문 기관의 교육 내용에 대해 문제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가 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실린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감사, 경기도의회 감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민원으로 인해 학교에서 외부 성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때도, 문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성교육 담당 교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검열을 하게 되어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성혁명 교육, 조기 성애 교육이라 주장하는 단체들이 문제 삼는 내용은 ‘성 인지’는 젠더를 포함하고 있어서, 에이즈 감염 경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설명할 때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교육과정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성 소수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 방안 참고자료로 국가인권위원회 링크가 제공되어서, 페미니즘 성향의 특정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서, 생활동반자법을 언급해서 등 보건교과서, 현대 사회와 윤리 교

과서 등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으며 성교육 도서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으며, 차별, 혐오 등의 문제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래 간 폭력에 대응하는 학교 폭력 대응 절차는 교육적 개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여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성교육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⁵⁾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제한적인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사춘기, 임신 등)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양육자들이 성교육 과외교사를 초청하는 등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⁶⁾

과거 가정에 VTR이 보급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성애를 부추긴다고 문제 삼는 장면 보다 더한 영상들을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림 한 컷을 문제 삼아 문제제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고 공보물 중 일부 내용



5) 한겨레(2023.09.07.). 여가부, 초중고 학생 '성 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인출일 2024. 10. 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467.html

6) 경향신문(2024.04.29.). “아동 간 성범죄는 공교육의 실패”...‘사교육’에 기대는 ‘아동 성교육’(인출일 2024. 10. 1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91444001>

주저않은 성교육, 날아오르는 기술 매개 범죄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가해와 피해, 그루밍 피해 등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가해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최소한의 시간만 성교육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로 폭력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히, 문제 행동으로 처분받아 오는 청소년이나 피해로 인해 만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사춘기 몸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사춘기 특성상 연애에 대한 관심이 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은 좋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식, 정보, 가치, 태도, 기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성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요?

“범죄라서 안 돼” 보다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로 접근해야

디지털 리터러시, 성폭력 예방 교육은 범죄니까 하면안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 이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실수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과하는 것,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다라도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내용에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아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범죄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에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SNS나 단체방에 공유하면 안된다고 교육하는데, 만약 타인의 특정 신체가 찍히지 않은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교육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으로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가려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 행동에는 지능적이고 범죄적인 행동도 있지만 친구 간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행동도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로 일어난 일도 있고, 고의로 상대방을 괴롭히기위해 한 행동도 있습니다.

동기나, 사건 발생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접근을 달리할 필요도 있고, 가해 청소년

을 대할 때도 문제 행동을 드러내고 직면하게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징계는 필요하지만, 징계나 처벌도 피해자 치유와 회복, 가해 행동의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특히 어른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은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 접근 방식입니다. 단순히 성병 예방이나 피임법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적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고, 관계, 감정,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9년과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WHO도 성교육이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국제성교육 가이드에는 섹슈얼리티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 △ 성행위 시작 시기 지연, △ 성행위 빈도 감소, △ 성 파트너 수 감소, △ 위험한 행동의 감소, △ 콘돔 사용 증가, △ 피임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성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 성교육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성교육의 내용을 생물학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여 관련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특히 심리정서적 내용을 강조하여 자존감, 자신감, 타인과의 관계, 감정과 느낌, 심리사회적 대응능력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포괄적 성교육 지침을 개발하였고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사회문화적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심리정서적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 AI시대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성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때, 한국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성교육이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에서 유해 정보를 접하고, 왜곡된 통념을 갖게 되고,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가해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 청소년에게 필요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합의된 성교육 가이드 마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학교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합의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교육은 성인지적 관점, 권리에 기반해서 접근해야 하며, UN SDGs, Gender Equality, 성 주류화, 포용적 다양성(Inclusive Diversity) 등의 가치와 방향 속에서 성교육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등, 존중, 배려, 연애, 안전한 이별, 성장 등의 내용이 담긴 관계 중심의 교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사 역량 강화

교과 과정에 반영하고, 성교육 시수를 늘인다고 해도 이를 담당할 수 없는 교사가 없다면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임, 소통/공감, 존중, 배려 등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기반한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성교육 담당 교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가해 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 처분 강화

성폭력 가해 행동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인간존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보호관찰소, 가정법원, 소년원 등에 있는 가해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특성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 학교와 성교육 전문 기관 간의 협업 강화

울산시교육청 '성교육 집중학년제' 사업. 2021년 학교에서 국제 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

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성교육, 중학교 1학년은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참여·활동형 수업을 통해 성이 법, 제도, 건강, 문화,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함을 체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교육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 및 교·보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중심의 성교육이 강화가 기본이지만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깊이있거나 사적이거나 민감한 주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성 고민을 상담하는 전문기관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제 3

학교와 아동인권 —교권4법 개정 이후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발제문

학교와 아동인권 —교권4법 개정 이후

이제호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학교와 아동인권

- 교권 보호 4법 개정 이후의 제도 제·개정 쟁점에 대한 정리와 검토 -

이재호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1. 들어가며

2023. 9. 21. 교권 보호 4법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9. 27. 시행되었다. 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을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금지’, ‘보호자의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 추가’, ‘교육활동 침해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 회복·지원 확대’,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²⁾.

2023년 7월 발생하였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교원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교권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졌고 해당 교권 4법은 큰 저항 없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교권 강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정도와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뿐, 오랜 역사 동안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와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교사의 권한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도 있어 왔다. 다만, 최근의 교권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2022년 생활지도의 법제화를 거치면서 ‘교사 개인의 권한 강화’ 및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에 관한 논의로 많이 좁혀지게 되었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의 움직임과 맞물려 이른바 ‘교권’ vs ‘학생인권’이라는 프레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 물론, 어떤 당사자들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1)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에 규정된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조항이다.

2) 이덕난,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그러나 실질적인 법 제정과 개정의 내용, 그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우려 등에 있어서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사의 통제 권한을 넘어 교사의 노동 조건이나 노동환경개선 등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발의안, 학교 공동체 전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제안이나 발의안 등도 있다. 그러나 간담회, 토론회, 각종 언론이나 정치권 논의의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교권’ vs ‘학생인권’의 프레임에 갇힌 이야기만 맴돌고 있다. 이에 여러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다른 대안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자리나 기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학교 내 사법화 문제, 학교 규칙, 학생맞춤통합지원(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성소수자 아동 등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권친화적 접근의 지원), 교사의 노동권 지원체계 마련 등 학교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섬세하게 설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나 법안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뒷전에 밀려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의 문제 논의의 내용이 교권 4법 도입 논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발제에서는 교권 4법 이후의 학교 현장과 관련한 주요 제도 제·개정에 대한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 인권을 위해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쟁점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및 그 이후의 변화

가. 교권보호 4법의 개정 내용

교권 보호 4법은 행정적인 절차나 실무상의 변화를 불러오는 내용도 있고,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는 내용들도 있다.

1) 원칙 내지는 선언적인 규정에 가까운 내용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에는 제13조 제3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보호자로 하여금, 교원과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협조하고 존중한다는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자체로는 보호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비용 부담, 법률적 책임 등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학생생활지도를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규정함바, 이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기존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법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개정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2) 행정적·절차적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교장은 민원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라는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도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이는 교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1차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또한, 「교원지위법」 제17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은...(생략)...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을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교원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수사 과정의 실질적 절차의 변화를 주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총선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이하 분량상 다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

이처럼 교권 보호 4법의 경우, 교원단체의 여러 요구들을 반영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비롯하여, 행정상·실무상 절차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규정 등 여러 측면의 개정들이 있는바, 다양한 관점의 법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나.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교원단체는 교권 4법 통과 이후에도 노동조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성명과 자료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³⁾. 또한, 이번 교권 보호 4법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2022년 개정된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도입에 대해서도 절차는 존재하나 이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⁴⁾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⁵⁾

3) 연합뉴스, “교권강화 법안 통과했어도 교사 57% “최근 1년간 교권침해 당해””, 2024. 5. 9.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9051400530>)

4)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분리지도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2024. 10. 18.

5) 한국일보, “생활지도고시로 교권 강화? 교사들 “79%가 효과 체감 못 해” 실태보고서”, 2024. 11. 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414380000112>)

그러나 이와 달리, 교육감의 의견 제출하도록 한 규정(수사과정에서의 판단자료로 참고)에 대해서는 실제로 불기소율이 증가하는 등 개정의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⁶⁾ 물론,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불기소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법률 개정의 성과라고 단순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불기소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아동학대로서 규율되거나 아동도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을 더 좁게 인정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매우 세부적이고 섬세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해당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에 이르는 생활지도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입증책임이나 소명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교원 개인에게 있었다는 점, 또 아동학대에 이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수사관 개인에게 맡기는 점이 있었다면, 교육청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책임과 자의적 판단의 치우침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실제로 교육감 의견 제출의 내용도 무조건 모든 신고 사항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제출된 것은 아니며, 그 의견의 내용과 수사의 종결의 방향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⁷⁾.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의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진단해 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권 보호 4법의 도입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선불리 판단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 개인의 지도 권한이나 면책에 관한 선언적이고 다소 원칙적인 규정은 일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사 과정이나 생활지도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도 그런 규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교원 스스로 제한없는 권한과 모든 교육활동에서의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규정을 도입해도 그 정당성과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행정적·절차적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에 대한 관리자의 부담 같은 내용은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 등 개선은 현장에서의 적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⁸⁾. 따라

6) 한국교육신문, “‘교육감 의견’ 교원 아동학대 수사 영향”, 2024. 7. 17.,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2171>)

7) 한국교육신문, “지난해 교원 아동학대 판단 건수 절반 감소”, 2024. 11. 21.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3189>)

8)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는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후 직위해제된 사례가 35건으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의 8% 수준으로, 교권 보호 4법이 도입되기 전 2022년 이미 아동학대 신고 → 일괄적인 직위해제 처분의 사례가 빈번하지 않았다.

서 이는 교원의 요구사항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나 교육활동 권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법리상으로 확인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후자의 방법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3.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교 규칙에의 적용

교권 4법이 도입되기 전 2022년 한 차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권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해당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023. 9. 1.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생활지도고시에서는 여러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 특히 물리적 제지와 분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우려가 있었고, 아동인권의 관점에서는 해당 내용이 법률의 근거없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우려와 달리,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은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발표⁹⁾하기도 하면서, 대다수의 학교의 학칙에 반영되면서 바로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인권위원회의 학교규칙 실태조사¹⁰⁾에 따르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2023년 12월 말 전국의 학교 중 198개교(36.8%)가 개정을 하였고, 지역별로는 대구시, 강원도, 대전시 등의 학교에서 개정을 많이 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학교규칙의 개정에 대한 부담이 학교 현장에서 있었으나, 이번 고시에서의 행정절차 요건 완화와 함께 교육청의 안내 등이 개정 작업을 촉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조사와 분석이 2023년 9월 고시 시행 이후 12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내용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35건...수사 대상의 8%", 2023. 8. 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3020800530>))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하여 즉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라 중요한 비위사항, 긴급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84051&step1=3&step2=1>)

따라서 교권보호 4법 중 직위해제 처분요건을 강화한 개정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 KBS뉴스,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교육현장 배포", 2023. 9. 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3298>)

10) 국가인권위원회(2023),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고시에 따른 개정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의 방향으로 개정은 적은 편이었으며, 보통 분리조치의 도입 외에 변화가 적다는 부분이 우려의 점이 된다¹¹⁾.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지도를 하기 위한 물적, 인적, 공간적 지원이 전혀 없음을 문제제기하고 나아가, ‘물리적 제지’ 및 ‘분리’에 대하여 법률로서 그 근거를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단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해당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학생생활지도의 실질적인 실태 및 해당 내용이 아동 인권에 줄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4.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및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

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및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

위와 같은 교권 보호 4법 제정 및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관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결국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폐지안이 가결되었다. 현재 모두 교육감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되었고, 대법원 인용되어 임시적으로 그 폐지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¹²⁾¹³⁾.

이와 동시에 2024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의 제도적 효과를 조례에 따라 맡기지 않고 법률로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하여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서 평소 논의가 된 적이 없었으나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하여 갑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배경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제도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에 걸쳐 학생

11) 국가인권위원회(2023),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260.

1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조례공포 2024.7.4.,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2024쿠1003 2024.7.23.] (2024년 11월 현재)

13) 한겨레, “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춰…본안 소송 판결까지”, 2024. 5. 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92.html)

인권조례가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장하는 법안은 2013년 발의된 ‘아동·청소년인권법(의안번호 1904411)’을 비롯하여, 2021년 발의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 2113107))’, 2024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2126618)’까지 그 발의가 계속되었다. 즉, 학생인권법의 발의는 조례가 폐지되는 움직임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라, 조례 등을 통해 계속해서 도입되고 논의되어 오던 ‘학생인권 보장의 제도화’의 과정에서 발의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생인권보장의 법제화 움직임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 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31),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법 반대 주장 및 움직임의 특징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법 반대 주장과 움직임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도하였던 단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단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실제로 폐지조례안 주민발안 청구의 내용이나,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에서 나오는 주장의 내용은 주로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하는 내용이나, 학생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성적지향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¹⁴⁾. 실제로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그리고 폐지 조례안의 주민발의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단체가 주도하였고,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보장된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통해서 등장하였지, 교원 단체 등은 교권이 학생인권과 대립이 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다¹⁵⁾.

그러나 학생인권법이 발의되기 시작하면서, 그 국면이 많이 달라졌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적어도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¹⁶⁾¹⁷⁾.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반대할 수는 없다는 원칙¹⁸⁾, 원래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었던 학생인권

14) 기독교일보, “4천명 운집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2023. 3. 10.,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3238>)

15) 물론 일부 교원단체들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환영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129600530>)

16) 한국교육신문, “교총 “교권추락 외면 학생인권법 반대”, 2024. 4. 30.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1519>)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 9. 11.

조례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과 함께 이와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¹⁹⁾에서 비롯되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육활동과 충돌될 것이라는 우려, 특히, 교원단체들에서 주장하는 아동학대 신고나 사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 학생인권법과 관련된 쟁점분석의 필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학생인권법 반대 주장은 ‘학생인권을 권리만 부각하고 과도하게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과잉입법이라는 주장’, ‘학교의 사법화를 촉진한다는 주장’, ‘학생인권법의 존재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을 포함)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나아가서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교사들이 걱정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인권침해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성명에서 ‘학생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빠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지 않는다’와 ‘학생인권법으로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일견 모순되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교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넓게 보았을 때 현재 ‘교권’이라는 단어²⁰⁾는 교사의 인격권, 교사의 노동권, 교사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한 등 여러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정확한 분석은 하기 어렵지만, 현재 발표된 성명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교원 단체 등에서 이야기하는 ‘교권’은 크게 ‘교사의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생인권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권리일지라도) 교육의 내용을 선택할 권리나 교사의 정치권, 교사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생활지도 고시 상) 생활지도인 분리, 물리적 제지, 훈육, 훈계에 관한 내용이나, 그러한 생활지도를 하였을 시 이에 대한 학생의 반발, 거부 상황에 대한 대처, 그

18) 이런 부분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옹호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단체와는 다른 형태의 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 (위 기사) 한국교육신문, “교총 “교권추락 외면 학생인권법 반대”, 2024. 4. 30.

20) 현장과 흐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제이므로 ‘교권’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엄밀하게 살피보다는 현재 언론이나 보도자료 등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비추어 서술하였다.

상황에서 기인한 아동학대 신고(학교의 사법화 우려도 교권보호나 교권 추락과 연결된 논의가 많다) 등의 우려가 주된 내용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학생인권 vs 교권’, ‘학생인권 법 제정보다 교권보호 우선’이라는 프레임 뒤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논의구조를 다시 잡아갈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제규정의 법제화)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제로 학생인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하는 주장의 우려가 실체와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우려는 어디서 근거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5.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의 2차 움직임

가. 교권 보호 6법의 발의 과정 및 법안 개정의 움직임

교권 보호 4법 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시행,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관한 움직임과 함께 교원들의 ‘교사의 지도 권한의 강화 및 법제화’, ‘교육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완화’, ‘교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사실, 그 사이에도 많은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법 개정이 조금씩 있어왔다. 예를 들어 2023. 10. 23.자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또한, 최근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원의 면책을 규정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되어있다²¹⁾.

나. 교권 보호 6법의 발의 내용 및 현재 상황

이러한 흐름과 함께 앞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교권 보호 4법으로는 교사의 교권보호에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권한 강화와 면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져 2024년 7월 교권 강화 및 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된 법 개정안 등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백승아 의원 대표 발의된 6개의 법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학교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하여 교육감,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개정(2201509),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보호 의무 규정 및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신설(2201628), 교원의 교육활동 내용의 명시화(2201446),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2201440)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나 법적 책임(면책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수업방해 학생지도법²²⁾’이라고 불리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나 아동학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해당 내용은 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규정의 개정(2201443), ② 초중등교육법상 (1)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병원 치료 이행강제 규정, (2) 생활지도고시 상의 물리적 제지 및 분리의 법제화(2201441)로 정리가 될 수 있다.

21) 한국교육신문, “체험학습 중 사고 교원 면책 법개정 교육위 통과”, 2024. 11. 6.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3078>)

22) 교육플러스, “5개 교원단체,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4.10.19.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2>)

〈2024년 7월 발의된 교권 보호 6개 법안의 내용〉

법령	의안번호 (의원수)	내용			
교원 지위법	2201628 (1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적 보호·지원 의무 규정 교육감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교원 관련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교육청 <u>교육활동보호조사관</u> 신설 			
초중등 교육법	2201509 (5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에게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폭법, 교원지위법 등 법률 사항, 민원 처리 법률 안내 의무 규정 교육부장관에게 민원처리 절차, 시스템구축, 지원 등 의무 규정 교육감에게 민원처리에서 교원보호방안 마련 의무 규정 			
초중등 교육법	2201446 (2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교원의 교육활동 내용 열거적으로 명시화 (*그밖에 법령에서 교원의 업무로 정한 사항으로 정하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교원의 업무라고 정한 것만 교육활동에 포함) 			
아동 복지법	2201443 (4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학대 요건 수정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40%; padding: 5px;">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td> </tr> </table>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보호조치 실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			
초중등 교육법	2201441 (50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및 치료 법제화 :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지원하도록 규정, 보호자의 협조 의무 규정. 물리적 제지 법제화 :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분리 조치 법제화 : 분리 권한 규정, 분리조치 거부 시 가정학습 인계(혹은 교육청 인계), 분리 조치 후 교장 → 보호자에게 보고 규정, 교장에게 분리 조치된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 인력, 교육방법 마련 의무 규정, 교육감에게 가정학습(교육청) 대상자를 위한 지원 내용 마련 의무, 국가/지자체 분리조치에 필요한 비용·인력 지원, <u>정당한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간주 규정</u>, 분리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 감독 규정 			
학교 폭력 예방법	220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 폭력 조사,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하며,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 요청내용 규정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이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규정을 개정하는 개정안의 경우(2201443) 아동 복지, 아동 인권과 관련된 단체, 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도 해당 개정이 아동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에 대한 개정은 당론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²³⁾.

23) EBS뉴스12 “[단독]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서 제외…교육-복지 이견 뚜렷”, 2024. 7. 24.

또한 필요한 경우,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병원 치료 이행 강제 규정은 아동이나 그 학부모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물리적 제지나 분리를 교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으로서만 법제화가 될 경우, 교육적 지원이나 지도가 아닌 교실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자의적인 아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 논란이 되고 있다.²⁴⁾

6.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의 논의

교권보호강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독박 교실²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교원의 어려움이나 인권친화적인 학교 공동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에 대한 방안, 그리고 해결 방안의 관점 등에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제안되고 발의되었다. 이러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긴급한 물리적 제지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여러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학생 및 교원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상당 수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하고 있다²⁶⁾.

그러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입법 취지나 주요 내용 및 조문을 살펴보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

(<https://news.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noon/60502006/N?eduNewsY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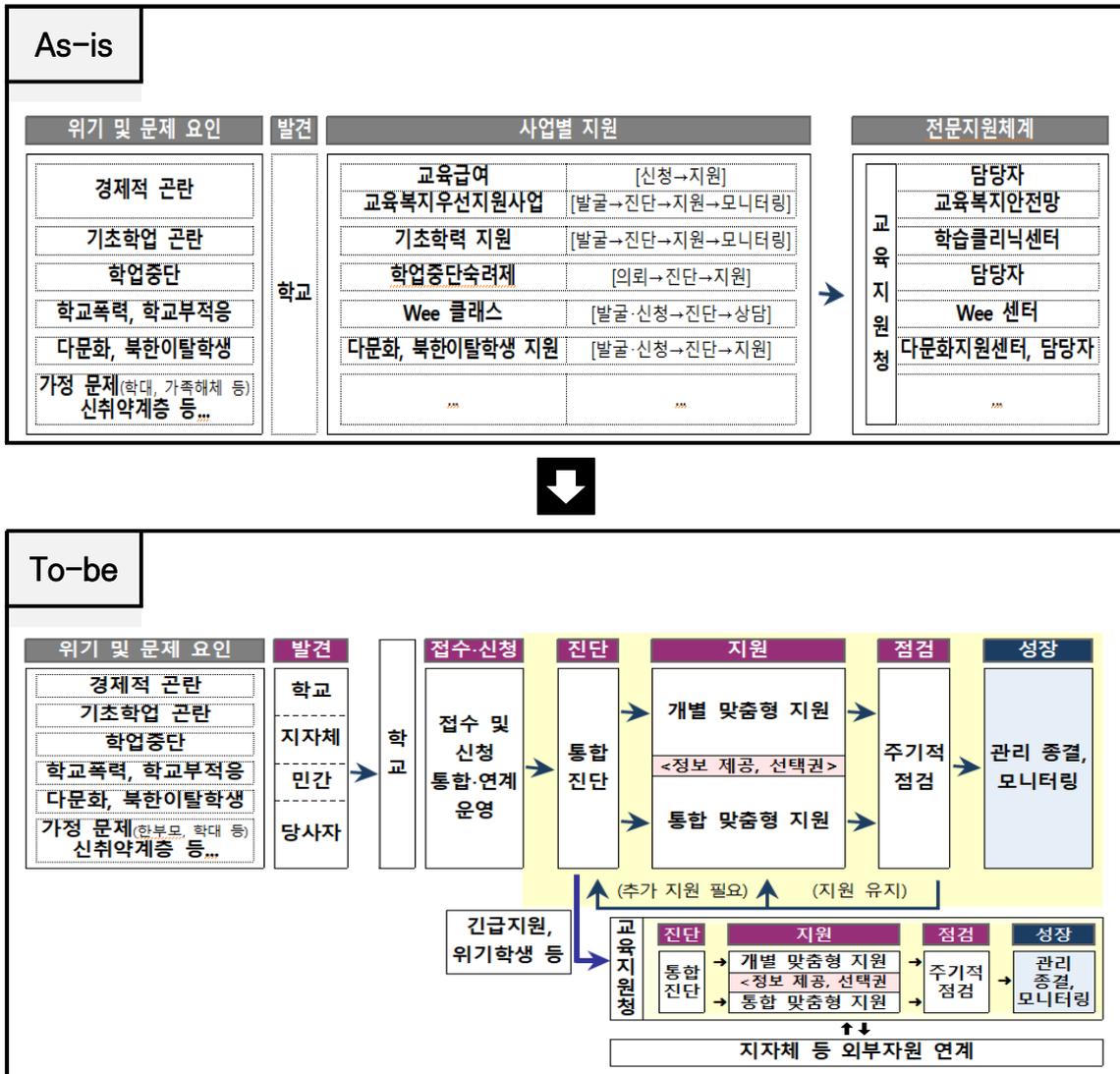
24) 국회교육위원회소위 회의록 및 성명 내용 등

25) 해당 용어는 시민사회로부터 사용되기 시작된 단어로, 학교 및 교실에서의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든 문제 해결을 교사개인이 해결하도록 되어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2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66),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32),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10)

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후 비교〉



(출처 : 교육부)

즉, 앞서 이야기했던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실상황 속에서 해당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절차를 규정하는지, 그리고 개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대처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이는 특수교육법에서 개별 학생에게 맞추어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계획, 교육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지원 체계로의 연계’ 부분만 강조되어 있고 지원 업무를 외부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제도의 설계 취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와 달리 학교 공동체로부터 지원대상학생을 손쉽게 분리하여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²⁷⁾.

나아가, 현재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을 동의 없이 ‘지원대상학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통해서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적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실제로 최근 ‘물리적 제지’, ‘분리’에 대한 개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함께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고 명명되며²⁹⁾, 함께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의 현장에서의 절박함과 어려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해당 제도의 관점을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교원이 이를 분리·통제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는 자칫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설계 방식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궁극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바꾸는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내용이나 절차를 원칙으로 삼고, 물리적 제지나 분리 등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특수교육법처럼 실질적으로 학교와 교실상황 속에

27) 이에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실태, 성과와 한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28)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물리적 제지의 취지는 ‘긴급 상황’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18회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 p71에서 백승아 의원은 물리적 제지가 교실에서의 분리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29) (위 기사) 교육플러스, “5개 교원단체,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4.10.19.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2>)

서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들, 의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제도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기타 :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논의

교권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현재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바로 전자기기(휴대전화)사용과 관련된 규제이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이나 교원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부분적으로 전자기기사용에 대한 쟁점이 별도로 논의되거나 조항이 존재할만큼 이에 대한 인식 차이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은 실질적으로 개별학교의 문화와 학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지만, 대개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수업 중에만 학칙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권위의 일관된 기준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습 문제, 학생생활지도 문제, SNS사용 문제, 사이버범죄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여론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관하여 아동·휴대전화 사용과 SNS사용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³⁰⁾. 또한, 최근에 인권위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제한 학칙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기각 결정을 하여 해당 여론을 강화하는데 인용되고 있다. 특히, 인권위 결정례의 경우,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별적인 상황과 별개로, ‘인권위에서 휴대전화 제한을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내용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³¹⁾

이러한 흐름은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휴대전화 사용의 적절한 제한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학습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와 정당성 획득으로만 해석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단순히 휴대전화 사용통제라는 쟁점을 넘어 학교생활, 그리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인권 존중과의 본질적인 구도와의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논의도 단순히 휴대전화의 해악 문제를 넘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관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0) 법률신문, “‘릴스·쇼츠·틱톡’에 빠진 아이들… 줄이는 SNS 제한법 발의”, 2024. 8. 21.
(<https://www.lawtimes.co.kr/news/200686>)

31) 조선일보, “[단독] 인권위, 10년 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2024. 10. 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0/07/727OSHLH2NHNL13JHN3BF7YCDY/)

8. 결론 : ‘공동체 모두를 위한 진정한 지원’의 방향

현재의 학교 현장과 관련 제도 제·개정 논의 방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거나 문제 학생에 대한 배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작년 교권 4법을 도입하였을 때의 방향과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교사가 처한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에 대한 내용만 강화하는 것은 교원이 마주한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법률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과 법적 면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방향은 교사에게도 불안을 해소하게 하지 못하며, 동시에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보장을 위축시키고 학생인권의 논의는 크게 후퇴시키는 반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에 대한 지원체계가 개정안의 중심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단순한 지원체계의 연계가 아닌,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 다른 구성원이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실질적인 인력지원이나 비용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에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 상황에서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과 방안과 지원이 무언지를 논의하여야 필요가 있다.

또한, 교권4법 이후 주요하게 발의되거나 이슈화되지는 않아 이번 발제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학교의 사법화 문제, 학교 내 공동체에서의 관계 회복 문제, 인권 침해 시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이나 사법적인 위협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주장은 학교 절차와 문제의 사법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법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법률적·행적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상황에 맞추어 교육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대안적인 권리구제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센터의 운영 방식이나 현황 실태를 분석해 볼 필요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중심으로, 처벌이나 징계가 아닌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권리구제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학생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요식적인 갈등 해결, 중재절차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관련 절차나 권한, 그리고 제도의 취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의 원칙을 세우고,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리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가 아닌 권리주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 현장의 제도 제·개정 논의를 재정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문

수 영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윤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영선 교사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숙영 대표 (평화비추는숲)

권리주체로서의 학생인권

수 영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 사례로 보는 2024년의 학생인권 현실

① 경기 지역 A 중학교 (조례 제정 지역)

작년 9월, 경기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 대표인 학생회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안내조차 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인 방청을 요구한 뒤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전교생 대상 서약서 사용을 설명 없이 강요하는 등 복합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해 단체에서 공문을 통해 학교에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해당 학교의 ‘생활인권부장’ 교사는 통화에서 “다른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데, ‘인권감수성이 높은’ 학생회장만 학교를 지옥같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학생 당사자가 찾아간 관리자는 “모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오되 학생 관련 안건이 없으면 돌아가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평일 오전(수업중)에 열겠다”며 학생 대표 참여를 사실상 막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학교가 인권과 학생 참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② 대전 지역 B 고등학교 (조례 미제정 지역)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전은 또 어떤가.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앞머리가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경사지게 깎아야 한다”는 이미 사라져야 할 과도한 두발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규정에 이의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 차례 개선을 시도했으나, 학교는 규정개정에서 교직원들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학생 10표=교사 1표’로 만들며 이러한 의견을 사실상 묵살¹⁾했다. 특히 이 학교는 이미 수 차례 인권위 진정, 교육청 민원 등 학생인권법제도의 부재 속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이 사용되고 인권위와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비롯해 언론에도 여러 번 공론화된 바 있으나, 학교에서는 이런 편법까지 사용하며 규정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

1) 한겨레, “매달 두발 검사…교칙개정 투표 집계 ‘학생 10표=교직원 1표’”, 3 Apr. 2024.

려졌다.

③ 서울 지역 C 고등학교 (조례 폐지 지역)

얼마 전인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공포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나흘 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용의복장 지도 계획’이라는 문서를 배포했다²⁾. 해당 문서에는 반별로 2명씩 용의복장 담당교사를 배정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 장신구나 컬러렌즈 착용, 두발 등을 불시에 검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추수감사절에 헌금과 과일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촌지를 요구하고, 일주일에 세 번 넘게 야간자율학습에 동원시키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서울교육청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조례 폐지로 인해 구제절차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심지어, 또 다른 서울의 고등학교는 학칙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가 조례가 폐지된 직후 보류했다.

2) 통계로 보는 2024년의 학생인권 현실

복수 지역의 인권침해를 접하며 분명한 것은, 조례 제정 지역과 비제정 지역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별적인 사례 이외에도 여러 조사들에서 학생인권의 보장 정도와 조례 제정 지역, 미제정 지역 간의 차이와 조례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을 비롯한 학교규칙은 가장 가시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학생인권 보장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³⁾에서는 조례가 있는 지역에 학생인권보장을 명시한 비율이 68.4%인 반면, 논의조차 된 적 없는 지역에서는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펌이나 염색의 제한, 화장이나 장신구에 대한 제한 등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 시도가 있었던 지역(논의 유)와 제정 시도가 없었던 지역(논의 무)간에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생활규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과정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말에 실시한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30%의 학교의 규정 자체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 대상 인식도 조사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받고

2) 오마이뉴스,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벌어진 일... 서울A고 ‘용의검사하라.’” 30 Apr. 2024.

3)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Dec. 2023.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에 그친다. 또한 규정 개정에 학생 참여를 규정한 70%의 학교에서도 개정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당사자 중심의 공론 과정을 밟는 형태가 아닌 그저 일방적인 의견제출 형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하다.

3) 그래서, 학생인권법이다

학생인권법은 지난 2006년 3월,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초로 국회에서 발의했다.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 강제 자율학습 금지, 소지품·일기장 검사 및 압수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명시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3년마다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학생인권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신설로 수렴되고, 애초 최순영 의원 안에서 명시했던 학생인권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부 폐기되었다.

이후 학생인권법 제정 노력은 2006년 광주, 2008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으로 변모했다. 2010년에 경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를 비롯한 총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⁴⁾

그러나 완전한 체벌 금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학생인권보장이 필요한 사항은 여전히 존재했고,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여전히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생인권법은 이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강민정 의원⁵⁾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했고, 현 22대 국회에서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도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학생인권법 소개

학생인권법과 그 내용은 조례 폐지의 대안으로 어느 날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06년 학생인권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어느덧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 학생인권법은 조례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 안착했고, 학생인권조례의

4) 시사인, “조례 폐지 위기 앞에서 학생인권‘법’ 외치는 이유”, 29 May. 2024.

5) 강민정(21대), 한창민(22대), 김문수(22대, 준비중)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별도 법안 형태를 차용하여, 기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형태의 학생인권법안과 그 형태가 다르다.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차이로 꼽힌다.

영향은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작년을 기점으로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복수의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권리구제 기구 운영 중단을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약화됨으로 인해 학생인권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예상하고 있다⁶⁾.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조례라는 법체계의 한계로, 조례가 없거나 폐지된 지역은 절차와 기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교들의 학생생활규정이 지난 2023년 10월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된 이후 연속적으로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파는 2025년학년도부터 학교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위기는 특정 교육주체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센터를 비롯한 구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가 ‘폭압적’이기 때문이 아닌,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 상황과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를 보다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현행 법체계 속에서는 ‘학생이’ 당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강제성을 가진 개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형사적 절차를 밟는 방안이 유일하다. 자신에 대한 평가권을 가지고 일과시간의 상당수를 함께 보내는 교사를 대상으로 형사적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학생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일종의 완충적 구제기구를 제시하는 학생인권법안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법적인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의 완충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이고, 결국 교실의 사법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연적인 것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인 것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그 자체로 부당하고 교육이 아니다. 학생인권법의 입법은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님을 반증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육주체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 논의로도 확장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 논쟁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마

6) 한국일보, 서울·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침해 구제 축소 초래", 7 May. 2024.

음 줄임과 갈등은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

5) 맺으며 : 인권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교육은 ‘병풍처럼 앉아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학교가 왜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공간인지, 학생들이 교사가 불편해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살필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을 단순히 징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 상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명분이 된다는 이유로 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듯이, 인권에 대한 오개념과 ‘남용’이 정말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인권적인 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교사, 학생, 양육자를 포함한 교육주체 모두가 제대로 인권을 배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타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인권조례가 줄줄이 폐지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24년 1월,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여성 차별 실무그룹 등 4곳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또 국회와 각 지방의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모든 학생의 최소한의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는 학생인권조례 존치 및 학생인권법 제정, 그리고 인권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권리구제 조치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학부모로서 현재 제도 변화의 우려점

이윤경 회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들어가며

올해 11월 초, 서울의 A 중학교에서 열린 3주체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찬반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교내에서 쉬는 시간을 포함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였다. 현재 A 중학교는 휴대폰을 걷지 않고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쉬는 시간까지 확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패널들의 발제 및 상호 토론, 플로어 토론 순으로 구성된 토론회는 그 다음 주에 진행될 교내 설문조사의 사전 토론 성격이어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그날 토론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다. 찬성 측 패널로 나온 교사는 ‘다른 학교들은 휴대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를 일일이 파악해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40곳을 조사한 결과 12개 학교만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고 응답했고, 무응답 2개교를 제외한 26개 학교는 ‘등교 시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플로어에서 한 학생이 “저렇게 많은 학교들이 휴대폰을 걷는다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면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친구들과 우정 쌓기 등... 휴대폰을 걷는 학교가 늘고 있는 현상이 과연 이런 이유들 때문만일까? 교권보호 5법, 서이초 특별법 등의 교권 강화 추세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우려

올해부터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학교 교보위를 거쳐 현재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교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타까운 사안을 많이 접했다. 교권침해 가해자로 신고되어 교보위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거의 80~90%가 생활지도보다 치료를 받아야 할 정서위기 학생들이다. 특히, 교보위에 출석한 특수교육 대상자, ADHD, 분노조절장애,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대부분이 약 복용을 챙겨줄 보호자가 없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위기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 생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은 계속 증가하고, 가정 지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보위에 신고한다고 그 학생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교감선생님을 때린 초등학생의 사건은 4학년인 해당 학생이 강제전학을 수도 없이 당했고 그 학교가 일곱 번째 학교였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은 해당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가정교육 탓을 하며 보호자에게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행 교권보호법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근본적인 원인 해소, 갈등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 교권보호법을 강화하고 교보위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도 교권침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보위도 학폭위처럼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만 늘어난’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교보위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학교마다 정서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리 제도에 대한 우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의해 이미 학생들은 교실에서 분리되고 있다. 장소가 없고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실상은 어떻게든 분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위에 접수된 교권침해 학생들의 사안조사서에는 분리 조치된 횟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ADHD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매일 교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담임교사가 부를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사례도 있다.

장애 학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9월 27일, 학교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던 감금 사건 사례를 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작년 겨울에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도전행동으로 심리안정실에 질질 끌려가 던져지고 1시간 동안 감금되어 등에 피멍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교육 활동이고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분리·물리적 제지인가.

분리 조치는 학생을 더 자극할 뿐 어떤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교실에 있는 학생들 역시 ‘나도 언젠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만은 교실에서 분리되고 수업에서 배제되도 교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장애 학생은 물론이고 초등 저학년이거나 표현을 잘 안 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보호자도 없이 방치되는 곳에 보내 놓고선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학교를 그런 곳으로, 교사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법에 동의할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

물리적 제지에 대한 우려

분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제지 역시 학생의 생활지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심이 커지고 폭력성을 배울 것이다.

물리적 제지는 명백한 폭력이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간접 수단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요즘 교보위에 교권침해 증거자료로 접수되는 ‘수업중 교사가 촬영한 녹음이나 영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기록해서 증거로 남기고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 경우, 교육적 목적이고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라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동의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동의없이 교사를 촬영하고 녹음한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 교권침해 여론을 촉발시켰던, 교실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충남 학생의 사안이 교사 불법 촬영으로 왜곡되었는 과정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평등할 수 없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교사의 판단에 치중한 물리적 제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 교사의 물리적 제지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행동이었어도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참고로, 교보위에서도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학생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진다. 그 결과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다.

물리적 제지가 허용되는 순간 학교는 소송의 장이 될 것이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에 대한 우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학부모들은 이 법이 언제든 통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작년 5월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학대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이를 통해 발생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고, 학교에서는 교사다. 부모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교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권력자인 것이다. 권력자가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은 그 무엇도 용서될 수 없다. 성인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비통해도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했다.

교사들은 현행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학교 상황에 맞지 않아 아동학대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 지금 이미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최대한 촛촛해야 할 아동 보호 대책에 큰 구멍을 내는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오히려 요즘엔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앞의 사례처럼 교사가 녹음하고 촬영하는 행동이 학생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도전행동을 야기하고 학생의 병증이 악화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나가며

분리와 물리적 제지는 교육적인 효과는커녕 오히려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불안, 적대감, 따돌림, 폭력성을 심어주는 반교육적인 행태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권에 의해 맡겨진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내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교권5법과 현재 발의된 분리와 물리적 제지, 아동학대 면책법 등은 학교를 죽이는 제도

다. 교육을 죽이고, 학생의 인성과 학교 생활을 죽이고, 학부모의 신뢰와 협력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학교라면 결국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조치를 강화해 온 법화 사회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학폭법이고 교권보호법에 의한 교보위가 다음 순서일 것이다.

공은 세계 내려칠수록 반동이 크고 강하게 튀어 오른다. 학생들을 억압하고 제지할수록, 학부모를 배제하고 무시할수록 반발만 커질 것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모든 법과 정책들이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승자가 없는 싸움에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 '긴급 동행 봉사자'를 파견해 준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긴급 동행 봉사자가 학생 곁에 함께 있는 것이다.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분리 교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견해 주는 데에 예산을 써야 한다. 그것이 교사를 지원하고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리와 물리적 제지가 아닌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이다.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생활지도를 위한 정책의 지향점

조영선 교사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당연히 여겨왔던 것에 대한 질문-생활지도와 학생인권

생활지도는 영어로 ‘Guida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진로 교육을 위해 심리검사나 상담을 통칭하여 사용되던 말이었다. 1908년 미국의 보스턴 시에 파슨스(Parsons)가 『Choosing a Vocation』이라는 최초의 생활지도 교과서를 출간하고 이 책에서 개인을 적성에 맞게 배치하고 직업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적성, 지능, 성격, 흥미 관심, 가치관 등), 직업에 대한 이해, 양자의 합리적 관련성의 발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생활지도는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상담, 심리검사, 진로상담, 취업지도, 학생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관, 학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전문적 활동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이 활동은 194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생활지도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활지도는 학교교육에서 교과지도나 학업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을 뜻하게 되었다. 즉, 학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적 활동뿐만 아니라 행동습관, 청결과 위생, 예절 등 학생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루게 되었다. 1945년은 일제 시대 말기로 황국 신민화 교육이 강화되던 때였다. 일제 강점기 였던 당시의 진로 교육에서 결국 일본에서 허가한 학교의 입학학을 통해 황국신민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 때 청결과 위생, 예절 등이 ‘생활지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때도 대학입시는 치러졌다. 일제 강점기부터 존속되어온 다양한 학교 각각의 대학별 고사로 치러지다가 전쟁을 맞아 획일화된 1)국가 연합고사의 형태로 치르게 된다. 결국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 나라의 진로 교육이 결국 개개인의 적성을 살리기 보다 학업에 열중하게 하여 대학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사실상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교육 행위를 뜻하게 되었고, 특히 교과 수업을 전달하기 위해 학생에게 행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2)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광복70년 한국인 의식주 변천사] ⑩ 대학입시

이렇게 볼 때 ‘생활지도’는 사실상 도입될 때 부터 전시체제에서도 입시를 놓치 않았던 우리 나라의 기형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슨스의 ‘Guidance’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특성에 따라 맞는 진로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가이드’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지만, 1945년 우리 나라에 도입될 당시는 일제 식민지에서 근대화되고 표준화된 황국신민의 신체와 행동습속을 갖추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이러한 식민주의가 쉽게 이입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주의를 면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기 위한 군사주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우리 나라의 근대식 교육은 군사주의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렇기에 칼을 차고 들어온 교사가 두발, 위생 등 신체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손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에도 한국 전쟁이후 단일화된 입시시스템 속에서 학생 각각의 적성이 아니라 대학입학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신분 상승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였으므로 이러한 진로교육이 대학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교육이라는 의미의 생활지도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법체제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교권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이전에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사의 모든 행위를 교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 교사의 행위는 학교장의 명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합법이었다. 194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50년 동안 한국 교육을 규정했다가 사라진 <교육법> 제75조에서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해 왔다. 교장이 교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교사는 학생에게 명령을 내리는 문화가 50년이나 지속되었고, 명령을 통한 교육이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교사 개인이 생각하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면 2012년 체벌 전면 금지가 선언되기 까지 60년이상 폭력 행위도 금지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명령을 통한 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법률은 1998년에 폐지되고 관련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의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바뀌었다. 여전히 ‘법령에서 정하는 바’라는 기준이 모호하기에 교사 또는 학교장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칙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교실마다 다른 생활지도의 방식이 통용되기도 했다. 아직도 같은 학교에서 어떤 학급에서는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학급에서는 금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교권침해’로 일컬어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2)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지도 [guidance, 生活指導]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우선 학생들에게는 내가 어떤 가치관의 사람을 교사로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 나에게 허용된 행동의 반경이 달라진다. 어떤 교사에게는 학생들이 화장하는 것이 문제인 반면, 어떤 교사에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화장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정하는 교사들도 그 기준이 다 다르다. 어떤 교사는 썬크림, 메이크업 베이스는 인정하지만 색조 화장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교사는 메이크업 베이스도 안 된다고 한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교사는 휴대전화를 꺼내기만 해도 압수하고, 어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사용했을 때 문제라고 한다. 학생 입장에서 생활 지도는 교사가 선호하거나 허용하는 행동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 되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학교 규범의 대부분은 교사의 지도와 처벌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켜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경우 사회에서는 ‘대량의 무단 투기’ 수준이 아닌 이상 처벌이 아닌 캠페인의 대상이다. 반대로 폭행, 도난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모든 규범이 교사를 통해 지도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교사가 처리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이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사의 말이 곧 법이자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학생징계권의 얼굴을 한 생활지도권이 소송을 부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사나 학교의 자의성에 맡겨지는 불합리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면 일관성의 부재를 근거로 민원의 공격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왜 전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는 전에 학교에서는 가능했는데 안되느냐의 민원은 이런 ‘자의성’이 만들어낸 악순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와 교사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라는 관념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케이스마다 학교와 교사에게 우선 요구하고 힘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학교와 교사에게 부여되는 자율성은 참여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닐 때 늘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성’의 영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교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자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3년에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생기기도 했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가 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교육 행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지 않기에 자의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교권 침해의 대안으로 실시된 생활지도 고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선 생활지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도하도록 하는 교사의 자의성에 의해 학생행동의 반경이 결정되는 자의성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용모 및 복장을 지도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폐지된 곳에서도 교사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이것이 부활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학생 훈육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했지만, 어느 것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이다. 실제 교육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보면 가장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할 학생생활의 영역이 단위학교의 학칙에 맡겨져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학칙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전체 학칙의 대상이 아니라 두발, 용의복장,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일부 조항 뿐이다. 학교에 따라 실제

의견 수렴하는 범위도 천차만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준 사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이나 벌점 규정은 의견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징계 규정의 위반 행위 조차 구체적이지 않고, 교사 지도 불이행이라는 교사 지도의 자의성을 기반으로 한 조항들로 가득하다. 실제로 많은 학교의 학칙은 교사들이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금지’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엄격히 법으로 규제하는 행위와 사회 상규상 지키면 좋다는 규범이 섞여 똑같이 징벌 체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징계 기준표³⁾와 벌점 규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근거가 명확해야 할 ‘준법’의 영역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사실 이 조항은 내용상 다른 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학생의 모든 행위를 징계할 수 있을 만큼 자의적인 내용이다. 학교 내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징계 기준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눈치 교육과정’이 된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기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수십 명의 교사가 강조하는 각각의 당연한 상황들이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상황을 해석하는 논리가 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폭언을 할 때는 교권침해가 되지만, 교사가 폭언을 할 때는 학생의 잘못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처벌로 해석된다. 이 정도 잘못을 하면 이 정도 폭력이나 모욕감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폭언도체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보기에’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 폭력을 당할 수 있거나 폭언을 들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이 한번 성립하고 나면 사실 그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나 타인에게 해가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된다. 물론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폭력과 폭언 대신 징계 기준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 역시 ‘왜 그 행동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하면 징계 위원회로 넘어가는가? 저 교사는 어느 정도까지 봐주는가?’의 기준만 남게 된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져야 할 원칙이 적용되는 대신, 교사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권한도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작 학생들이 익혀야 할 가치와 기준은 실종되는 것이다. 즉 별을 주는 선생님 앞에서는 뛰지 않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은 선생님 앞에서 다시 뛰게 되고 결국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힘에 대한 예의를 배우게 된다. 체벌이 있던 시절에

3) 위 징계 기준표는 2024학년도 모 고등학교의 징계 기준표이다. 징계 기준표는 학교 홈페이지의 학생생활규정에 공개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의 징계 기준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는 그 힘의 실체가 물리적 폭력이었다면, 현재에는 수행 평가 점수나 생활기록부 기록이 학생을 억누르는 힘의 원천이 되고 이것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교사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3학년이 되고 나서야 학교의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이유는 징계나 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비정규직 교사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 역시 이러한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학교의 평가 체계와 징벌 체계가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학생의 행동을 교사의 판단에 맞게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쓰지 않으려 하거나 못쓰는 교사가 이러한 수단에 기대지 않고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할 때, ‘그냥 별점 주세요,’나 ‘점수 깎으세요’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아니라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별점이나 징계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일 때, 사실상 생활지도권은 교사 개인의 학생징계권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내용	항	위반 행위 내용	징 계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교권 (중점 지도)	*	출석정지이상의 교권침해발생시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 결정 확정일 까지 2차 교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교사 수업시간에는 해당학생을 선 조치로서 학교장 결재를 받아 '자기성찰 지도'를 하며 생활교육위원회에 추인을 받는다.					
	①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관련 정당한 지시 및 지도 불응 1회	○	○	○	○	○
	②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관련 정당한 지시 및 지도 불응 (동일교사 기준 누적 2회)		○	○	○	○
	③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관련 정당한 지시 및 지도 불응 (동일교사 기준 누적 3회 이상)			○	○	○
	④	교사에게 욕설 및 폭언, 폭력, 협박(고함, 고성 및 물건을 차고 던지는 행위)을 행사					○
2. 준법	①	징계 이수 시 지도 불응, 무단이탈· 무단불참 등으로 징계 미이수		○	○	○	○
	②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 진술 또는 위증 행위	○	○	○	○	
	③	학교 게시물 고의 훼손 혹은 학교 기물 파손	○	○	○	○	
	④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 후 석방		○	○	○	○
	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문서 및 영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	○	○	○	○	
	⑥	법률적이나 도덕적으로 학교의 명예 훼손	○	○	○	○	
	⑦	금품 절취 또는 사취	○	○	○	○	○
	⑧	공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불온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		○	○	○	○
	⑨	학교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체나 동아리 조직 또는 가입	○	○	○		
3. 교육 활동	①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나 타인의 학습에 대한 지속적 방해 행위		○	○	○	○
	②	고사 관련 부정행위		○	○	○	○
4. 흡연 음주 (중점 지도)	①	술, 마약, 본드 등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 또는 음주측정 거부	○	○	○	○	○
	②	담배 또는 라이터 소지	○	○	○	○	○
	③	흡연(흡연 측정거부 포함)을 하여 1회 적발된 학생		○	○	○	○
	④	흡연관련 사회봉사징계를 받은 학생이 흡연(흡연 측정거부 및 담배, 라이터를 소지 포함)을 하여 2회 적발된 학생			○	○	○
	⑤	흡연관련 특별교육징계를 받은 학생이 흡연(흡연 측정거부 및 담배, 라이터를 소지 포함)을 하여 3회 적발된 학생				○	○
	⑥	흡연관련 출석정지징계를 받은 학생이 흡연(흡연 측정거부 및 담배, 라이터를 소지 포함)을 하여 4회 적발된 학생					○

번호	생활 벌점 내용	벌점
1	등교 시 슬리퍼 착용	1
2	등하교 시(교외 행사 포함)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1
3	낙서, 침, 껌, 쓰레기무단투척, 실내공놀이 등의 기초질서문란행위	2
4	교내 사복 착용 (학교 승인 티셔츠 및 겨울철 외투 제외)	2
5	심한 욕설 행위	2~3
6	피어싱 또는 문신 행위	3
7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입실	3
8	등교 시 교복 미착용(상하복 각 1점)	1~3
9	수업시간, 아침조회, 종례 중 화장을 하는 행위 (화장용품 및 파우치 등이 노출된 경우도 포함) -1차, 2차, 3차는 동일교사에게 적발 시 기준	1차 적발-3 2차 적발-4 3차 적발-5
10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 행위(단말기 노출 및 이어폰 착용 포함) -1차, 2차, 3차는 동일교사에게 적발 시 기준	1차 적발-5 2차 적발-8 3차 적발-10
11	교사의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자리이탈, 실내정숙, 음식물섭취, 질서, 안전 등등 기타 행사 관련지시) - 1차,2차,3차는 동일교사에게 적발 시 기준 * 교권침해(수업 및 생활지도 관련 정당한 지시 및 지도의 지속적인 불응)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1차 적발-5 2차 적발-8 3차 적발-10
12	화재가 없는 상황에서 화재경보기 작동	1차 적발-8 2차 적발-17 3차 적발-20
13	등하교 시(교외 행사 포함)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것 또는 오토바이 등에 동승하는 행위	10
14	교실 기자재의 교육 목적 외 사용	2
15	기타 교칙 및 규정 위반 행위	1~10

교사의 자의적 학생징계권은 교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이러한 생활지도 체계는 교사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기보다 교사가 내 행동의 반경을 결정하는 권력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에 순종하거나 반항하는 둘 중 하나의 전략을 택하게 만든다. 그러다 후자의 선택을 하게 될 때 교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행동의 경계를 교사의 기준에 따라 정하다 보니, 그 기준에 벗어난 모든 책임도 교사가 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금지’가 더 쉬운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앞에 말했듯 교사가 본 기준에 따라 행동을 평가하여 교육적 조치라 일컬어지는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사회에서 복잡한 맥락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 맥락을 삭제한 채 처벌의 내용과 형량만을 고민하게 된다. 또, ‘금지’하는 것이 ‘허용’하는 것보다 교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즉 교사인 나는 ‘금지’했는데 학생이 잘못된 것이니 발생한 결과에 대한 교사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다. 실제로 학교에서 의무화된 대부분의 안전대책은 사고가 났을 때 면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에게 사전에 금지의 행동목록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교사나 학교는 ‘금지’를 일상화하고 예외적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의 영역이 징계 행위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보니, 이것은 교사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안전을 위해 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복도에서 뛰는 학생을 교사가 목격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상응하는 벌을 주는 역할은 교사의 몫이 된다. 물론 교사들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 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벌을 주면서 기대하는 바는 학생에게 ‘안전을 위해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겠다’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학생이 복도에서 뛸 때마다 같은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즉 그러한 행동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CCTV와 같이 어떤 행동에 대해 벌을 줄 때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행동은 맥락 속에 존재한다. 같은 행동을 봐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같은 사람이 봐도 넘어가는 때도 있다. 결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교사 아닌 다른 사람, 즉 학생이 발견했을 때는 주우라고 명령하거나 벌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학교 밖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어디서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를 벌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걸리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의적인 징벌 규정이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벌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 안 걸려야 할 것인가?’의 감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에게도 생활 지도에 무한 책임과 부담으로 이어진다. 문제 상황을 처벌하는 징계 규정을 세세히 추가하면 문제의 경중 또는 원인과 관계없이 규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기는 학생도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 어떤 규칙을 위반하든 간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아니면 별점을 매기는 등의 단순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학생들 각자가 모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각을 하는 경우에도 ‘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깨워 줄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집이 너무 가까워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각각 다른 원인을 배경으로 문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별점을 매기고 청소를 시킨다고 해도 그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듯 많은 행동에 대해 단순히 금지와 처벌의 방식이 반복되어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학생들의 좌절과 불안 등에 대해 접근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지고, 문제 행동은 계속 재발하게 된다. 그래서 규칙을 다시 강화하고, 그러면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이 더

늘어나고, 또다시 규칙을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성화되면 규칙은 있지만, 학생들은 계속 규칙을 어기고 “우리 학교 엉망이야. 우리 반은 엉망이야”라는 등의 학교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와 교실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사회라면 그 안전망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어기고 싶은 마음에 대해 표현하고 이유를 듣는 과정에서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처벌당하는 구조이기에 감시자의 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골몰할 수 밖에 없다.

또, 징벌 체계는 필연적으로 벌에 대한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 벌 받는 방식에 따라 받는 영향은 다 다르다. 어떤 학생은 어떤 비언어적 행위나 눈빛 만으로도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같은 과제라 하더라도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기도 한다. 고통을 통해 다시는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에 이러한 벌이 통용되지만, 벌은 그만큼의 트라우마를 남기고, 그 트라우마는 그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분노로 남게 되는 것이다.

즉 징벌 체계를 통한 행동의 규율은 서로 다른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지닌 학생들에게 다른 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습에 동기화된 학생들만을 정상적인 학생으로 치부하듯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지도 역시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 관계를 맺지 못해 교실 환경을 불안하게 여기는 학생 모두를 비정상적인 문제 학생으로 만든다. 즉 수많은 행동의 금지, 그로 인한 단순 고통을 유발하는 지도 방식은 다양한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이다. 일정시간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ADHD 학생은 늘 수업방해자로 호명되기 일쑤이다. 학생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역시 자녀 교육에 일정시간이상을 쏟을 수 있는 양육자를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육 및 ‘생활지도’는 생활지도는 정상성을 전제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없다.

생활지도는 왜 학생인권 문제가 되어 왔는가

이번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드러나듯 교육당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범위를 실로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규범에 의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 용의 복장 위반을 생활지도의 범위 내로 제시한 것은 교육 당국이 여전히 인권 침해 행위를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 제6조(보건 및 안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듯 교사가 지도해야하는 영역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 학생 개인이 존중받아야할 인권의 영역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학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허락되고 장려되는 공백 속에서 침해되어왔던 신체의 자유나 사생활의 권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다보니,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을 생활지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학교는 이런 영역은 학교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결정할 영역으로 맡겨야한다는 학생인권의 주장에 대해 교권침해라고 느끼는 감각이 생긴 것이다.

실제 ‘스쿨미투’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공격이 이어졌다. 교사의 입장에서 좋은 의도에서 행해졌지만 학생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의 교사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확인할 길 없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어왔던 관행이 교육의 이름으로 계속 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한 때는 복장 규제를 위해 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볼 수 밖에 없었던 지도 행위나 웃음의 코드로 불편하지만 용인되었던 교사들이 성희롱적 발언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교사의 지도 행위에 공식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없기에 유지되어온 것이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교사의 모든 말이 법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말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인권제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되어왔다. 이는 이제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관행이 없어져야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두발 길이 자유, 염색 허용, 파마 허용, 생활복 허용 등 파편적으로만 알려진 채 그러한 감시 행위에서 작동했던 교사-학생의 위계나 신체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인권적 의미 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바가 크다.

꼭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성적 불쾌감은 어느 순간이든

누구나 느낄 수 있다. 만약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에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 교사의 그러한 실수가 처음 일어났을 때 바로 문제제기하고, 교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마무리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보니, 그 교사와 만나야 하는 때 시간과 공간에서 그러한 불쾌감이 누적되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로 보내지거나 생활기록부 기록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쌓이고,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난 졸업생이 되어 사법적 수단에 기대어 그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생활지도가 학생인권의 문제가 되어 온 것은 공식적으로 견제받지 않은 학교 규율을 교권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집행되어왔던 역사를 보여준다. 어느 사회든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없이 학교에서만 지켜야 하는 규율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해야 하는 때가 왔다.

2. 인권친화적 교육활동에 생활지도에 대한 정책의 지향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행동 목록과 징벌 체계의 목록으로 구성된 현재 생활교육 시스템의 대안은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층위의 규범이 존재한다. 지켜야 할 매너를 교육하고 홍보해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단계의 규범, 법규 수준의 강제 조항과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 지역이나 공간의 문화에 따라 특수하게 만들어진 규범도 있다. 이러한 규범들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규범으로써 생명력을 갖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규범들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재’를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한다면 그 타인이 누구인지, 나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다르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 치명적이라고 느끼는지 감각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즉, 민주시민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감각을 배우기 위해서는 타인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서로 다른 삶의 맥락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끼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때 자유에 대한 감각과 경계도 살아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라는 한 사람의 지시를 통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

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인권존중 생활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학생들이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 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익히는 것이다. 근데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채 교칙이라는 사법체계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그 사법이 교사라는 인격을 통해 구현되다보니, 교사들이 인권감수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마치 경찰 폭력이 자행되는 공권력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모멸감과 인권침해로 다가와 교사를 공격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특히 교사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자신이 구제받을 수 있고, 인권침해행위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학교 시스템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 입장에서 ‘안 걸리면 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생활 원리를 익히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 ‘원칙에 관한 토론과 적용의 과정’을 ‘구조적 변화와 동반하여’ 진행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맥락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려면 지켜야 할 규칙은 ‘행위’의 언어보다는 ‘원칙’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즉 ‘행동’의 언어로 모든 행동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만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할 여지도 없고 각각에 대해 다 다른 벌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선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을 세우려면 그 행동이 왜 문제인지 모두가 토론하여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마다 사람들의 판단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징벌을 내리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은 타인에 대한 폭력 등 몇몇 영역으로 최소화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동에 대해 자율적 영역이 최대화될 것이다. 이것은 규칙이라는 질서가 없는 아노미 상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교칙에 있는 세세한 규칙만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나? 우리 반 동료는 괜찮나? 선생님은 괜찮을까?’ 이런 안부를 묻는 질문들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이 때에도 이것이 규범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 지켜져야 할 규범의 첫 원칙은 ‘구성원 상호 간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한쪽 입장만으로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은 규칙이 아닌 명령이 된다. 입법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라는 기관을 두는 것도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합의하여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규범의 두 번째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칙은 학생들만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칙의 내용 역시, 꼭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내용보다는 허락받아야 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을 때, 교사는 할 수 있지만 학생에게는 금지된 것들(두발·복장, 휴대전화 규정 등)이 많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에게 늘 규칙의 예외를 보여 주고, 학생들은 그러한 규칙에 의문을 품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칙이라면 교사, 학생, 학교 관리자, 교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 될 때, 규범으로서의 생명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행동이 ‘누구의 눈에 보기에든 명확한 객관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는 그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에 의해 없어진 교칙도 한 교사가 정당한 지시라고 여기면 부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두발 규제 조항을 없애도 그 이듬해 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사들은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야?”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우리 학교는 작년에 두발 규정 없었는데요”라고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반응이 돌아오고,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한다. 즉 학생 생활 규칙의 ‘교사 지도 불이행’ 처벌 조항은 학교의 입법 절차를 뛰어넘는 사적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험을 하고, 민주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 행동의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원칙을 공유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도 이것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그 기준을 합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과 끊임없이 토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가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나의 머리 스타일과 옷 입는 스타일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금지하는지 반문하는 것이다.

학교 규칙이 서로 다른 타인과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한 규칙이라는 것이 공감되고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이 공간이 각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각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전제 아래서 나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내면화할 수 있을 때, 교사 또는 힘 있는 누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언어로 강제 규정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학교 밖 사회에서 형법으로 존재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행위화한 규칙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등의 원칙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보다는 원칙이 살아 있는 교육을 하는 게 규칙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상황마다 별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원칙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문제 행위’가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그 공동체 전체가 문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논의하고 참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많은 학교나 학급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집중한다. 이렇다 보니,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해도 맥락에 대한 판단은 교사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규칙을 만들지 않고 3월 내내 ‘모든 구성원은 인권이 있고 우리는 서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토론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판사의 역할을 요구하겠지만, 이때 교사가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권이 왜 침해당했다고 느꼈니?’라고 묻고, 상대 학생에게는 ‘이 학생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라는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 스스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경청하면서 ‘해도 되는 장난’과 ‘해서는 안 될 장난’에 대해 어떤 지점에서 서로의 생각이 같고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를 받아들이는 인권의 언어가 살아 숨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세세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의 준수 여부를 누군가 지켜보고 감시하여 만드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문제 행동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보면 문제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도전으로 일컬어지는 “왜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는 다른

힘 있는 사람의 행동은 용인되는데 왜 힘없는 나의 행동만 징벌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억울함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이 공간에서 아직 인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 학생이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왜 나한테만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가 생길 것이다. ‘왜요?’ 역시 교사의 판단과 지시에 도전하는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의도를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열리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의 기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존중하고 배려한다.
- 어떤 정도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비판은 건전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세부 원칙

- 학생이 지켜야 할 원칙 - 폭력 사용하지 않기, 객관적으로 해결점 찾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학급공동체를 모두에게 열어 있도록 통합하기 등
- 학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 자녀의 인격적·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학교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등
-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 - 전문성 있는 수업 하기,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 주기
-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 구성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서울시교육청(2012), <외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이것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김나지움의 학교 규칙이다.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원칙과 각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지켜야 할 세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또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이러한 원칙 하에 해결책을 찾고 지켜야 할 개별 세부 원칙에 따라 참여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다. 모든 행위마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원칙과 주체가 지켜야 할 개별 세부 원칙 속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 아니지, 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 입장에서든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내고 주체로서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규율을 만드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원칙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될 때

교사 한 사람이 학급 구성원 모두의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처벌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도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 오롯이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교사의 교육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을 때 교사가 져야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사의 죽음이 일어나고서야 교실의 어려움이 ‘공론화’된 것처럼 학교에서 ‘공론화’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한 교실에서 일어난 문제는 비단 그 교실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아니 없는 것처럼 조용히 처리할 것을 요구 받는 사람 또한 교사이다.

학생인권의 제도화는 학교에서 매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을 교사 혼자 봉합하려 하지 말고,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사가 규칙을 만드는 것부터 지키게 하는 일까지 입법, 사법, 행정의 총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생겨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교사가 해야할 역할들을 안전하게 해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모든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독재자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누구도 누구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전제가 통할 때 현재 교사에게 부과되는 무한책임도 시스템에서 보호하는 감당할만한 책임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들에게도 자신의 교육경험과 관성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정확한 경계가 있을 때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인권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대한 안전한 경계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법에서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은 피해 상황을 늦지 않게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학내에서도 학생회 등이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문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즉시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신고로 갈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나 성 비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되어 있다 보니,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센터나 옹호관 등의 기구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 호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행정 기구를 둬으로써 모든 사건이 사법기관으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학생인권구제 기구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권 침해 행위는 한 교사의 인권 감수성이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교사가 속한 학교나 교육청에도 그런 행위가 용인되는 문화를 만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속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이 요구하고 권고할 수 있다. 교육청도 가해 교사 처벌로 할 일을 모두 했다면서 학교 현장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있을 때, 교육 기관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행위는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공동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교육 문화 전체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연이은 폐지 움직임에 따라 전국의 학교가 동일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자, 일부 교사단체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아 제3자에 의한 구제 신청 등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에 교사, 교육전문직, 법조인 외에도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게 한 부분에 대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이라는 공교육 체계에서 성장하고, 공교육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사안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을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며 배제하는 것이 정당할까? 교사가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방과 후에는 누군가의 양육자이며 일반 시민이듯이 일반 시민들도 학생이었고 양육자이며, 다른 장면에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직업적인 교사만이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교사만이 교육활동을 결정,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면, 인권의 보편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육활동이라면 그 정당성을 보편적으로 이해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

실제 교권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교권4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은 모호하기만 하다. 정당성의 기준을 교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정당성을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분쟁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탓이 크다. 오히려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 지켜야 할 학생인권의 기준이 확립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의 정당성도 보다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법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교사든 학생이든 공교육 기관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면 민원 제기나 법적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적 방법을 찾게 되는 배경에는 학교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어느 지역인가, 사립인가 공립인가 등등에 따라 다른 기준의 학칙을 적용받는다. 교사 역시 지역 또는 학교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교육활동이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어느 학교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듣고 민원 대상이 된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학생인권의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확보하고,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든 동일한 인권의 기준에 따라 존중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 이것이 학생인권법이 그리는 학교의 모습이다.

가장 멀어보이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교사들은 이러한 해법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여기며 실제 학교에서 적용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2012년 체벌 금지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피교육대상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금지에 대해 폭력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던 것이다. 2000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4)〈프린스 앤 프린세스〉에 보면, 문이 잠긴 성에서 공주를 구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왕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다양한 시도에서 공주를 나오게 한 것은 결국 공주에게 그 좁은 공간에서 외롭게 지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 하듯 정중하게 부탁하고 오랜 시간 설득하는 것이었다. 만약 교사의 말이 즉각적으로 학생에게 관철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그런 대안은 없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그러하듯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해결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존중해야 할 경계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러한 대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프린스 앤 프린세스 (Princes et Princesses) 감독 미셸 오슬로, 2000년 1월 26일에 공개된 프랑스의 실루엣 애니메이션 영화.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이다. 왜 그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느끼고 소통할 수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배울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 관행에서 ‘대화’와 ‘상담’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대화와 상담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와 상담에서 주된 발화자는 교사이다. 교사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질문을 하거나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대화’와 ‘상담’은 상호 소통이라기 보다 지시와 복종에 가깝다. 지시에 따른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벌을 주는 징계권이 사용되고, 상담의 끝은 결국 교사의 지시가 관철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그 지시를 따를 수 없는가?’ 또는 교사가 말하는 가치가 당사자에게 왜 의미있게 들리지 않는가에 대해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시를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렇게 대화를 지속해야 할 필요는 없어져버린다. ‘야,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벌점이야.’라고 말해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는데 누가 이러한 말걸기를 하겠는가? 학생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면 벌점을 받거나 따라주고 만다는 심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까지는 절대 가지말자는 합의가 있을 때, 폭력은 절대 쓸 수 없다는 전제가 있을 때 역설적으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대화와 상담에 대한 연수가 넘치지만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은 결국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학생에게 강제적인 벌을 줄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위에 예시로 든 것처럼 교사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할 여지 없이 교사의 모든 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교에서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징계 조항이 있는 한 상호간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하는 교육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흔히들 어린이, 청소년은 논리가 없고 미성숙하여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가 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이해받고 그 욕구 자체는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받았을 때이다. 자신의 욕구의 존재는 긍정하지만, 이것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을 둘러싼 언어는 모두 그들의 취약점으로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논리로 가득하다.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라는 교육의 정의 자체가 이러한 취약점이 마치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제한된 상황

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가 없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회가 들었을 때, 사회가 해야 할 대화와 시도는 그들의 삶이 처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취업 전쟁의 실패에 지쳐 은둔형 외톨이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하며 노숙자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방법이 없고, 의존의 댓가로 모든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대상을 공격할 수 밖에 없다. 역시 더구나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부당하다고 해석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뜻을 그 사회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이 처한 맥락 없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말하기를 교육적인 대화와 상담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그 방식은 당연히 교육의 방법으로 무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의 역사는 ‘때려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한다’는 전제에서 반복되어왔다. 이 전제가 없어질 때만이 왜 저렇게 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 걸까라는 진정한 질문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3주체 갈등과 회복을 위한 대화가능성

박숙영 대표 (평화비추는숲)

1. 기형적인 교육구조가 불러 온 교육 3주체의 고통과 갈등

지난 9월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한계로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지적하였다. 교육이 길을 잃은 지 오래고, 학교는 점점 더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당사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인 교육 3주체다. 교육의 기형적 구조로 인한 고통은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 격화, 법적 소송 야기, 적대적 관계 형성으로 교육 붕괴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의 고통은 청소년 자살, 정서적 위기 학생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교사의 자살과 우울과 트라우마 등 교사들의 정서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 3주체의 교육 고통을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형적 교육의 희생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는 희생자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구조 변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교육 3주체 간의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침해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사법적 해결에 경도되어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발제자는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중심으로, 처벌이나 징계가 아닌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권리구제제도의 설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교육적 해법으로써 그동안 학교현장의 갈등을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 소개와 회복적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교육의 사법화 문제와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조치 결과의 생활기록부 기록’이라는 강력한 학교폭력 엄벌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였다.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반면에 학교폭력 조치결과에 불복하는 법적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¹⁾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대상 고소·고발은 1,200건에 달하고 이 중에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이다.²⁾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법적 쟁송의 장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성원 간에 불신과 단절이 심화되고 공동체는 와해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에는 사법적 접근은 한계가 많다. 최근 학교폭력은 은근한 따돌림, 꾀를 주는 눈빛, 어깨빵, 거짓 소문, 시비, 비꼬는 말, 패드립, 뒷담, SNS 상 욕설 등등으로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 사람을 배제 시키거나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서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들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관계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적 폭력은 우울증, 등교거부, 자살 등으로 그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폭력으로 증거가 애매모호하며 사소한 폭력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처벌조치는 피해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당사자 간의 원망은 갈수록 커져서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논란의 핵심인 ‘정서적 학대’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정서적 학대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와 주관적 느낌에 따라 범죄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정서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지만, 개별 사안 자체는 경미해서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고, 처벌해도 교육 이수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욕 한마디 했다고 그때마다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는 사소한 일로도

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12.3%에서 2013년 2.2%, 2014년 1.4%로 단기적으로는 확연히 감소 결과를 가져왔다. 학교폭력 조치결과에 불복하는 법적 소송은, 2012년 행정소송 50건은 2015년 109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 255건, 2023년 6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치불복 행정심판도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 지난 8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드러난 아동학대 관련 소송이 전체 교권 침해 소송 114건 중 45.6%에 달하는 52건이다. 이는 서이초 사건 전 50.6%에 달한 것에 비교하면,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교사에게 꾸중을 들은 아동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혼냈어요.”, “선생님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했다고,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했다.³⁾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학교에서 갈등과 문제 발생을 피해갈 수 없다. 학교는 교육기관 이기에 발생한 문제로부터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정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학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피해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찾고자 회복적 실천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3.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 사례와 가능성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권침해, 수업방해, 학교폭력신고가 발생했다. 3월부터 몇몇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담임교사 불링이 학급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지만,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왜 우리 아이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켜볼 것이다.” 으름장을 놓았고, 교사는 그 일로 생활지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 불링에 앞장서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었다. 6월이 되면서 학급은 수업이 불가능 정도로 무너졌다. 교감은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했으나, 이 문제를 교권침해로 다루는 것에 고민이 많았다. 교권침해 신고 대상이 전체 학생들이었고, 이 일로 학부모의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급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였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의 악순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교감은 이 문제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다루기를 원했다.

회복적 정의는 발생한 피해에 초점을 두고,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하기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해결과정에 당사자와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며, 이를 통해 훼손된 존엄의 회복, 피해 회복, 책임 회복,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정의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관점의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

2주 동안 학생들을 문제해결과정에 참여시키는 서클 수업을 5회기 진행했다. 1회기는 ‘학급의 어려움과 문제를 성찰하기’, 2회기는 ‘내가 꿈꾸는 학급의 모습과 존중의 약

3) 송원재, <교사가 아프다>. 살림터. 2024.

속 세우기’, 3회기는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지기의 의미 성찰’, 4회기 ‘책임지는 행동하기’ 5회기 ‘학급 공동체성 형성하기’ 주제로 진행되었다. 막상 문제해결과정에 들어가니 사실은 학생들은 학급과 자신들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선생님을 불쌍하게 여기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고 있었다.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달했다. 그리고 ‘안전과 존중을 위한 약속’을 세우면서 학급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2)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모임

처음 방문했을 때, 학급은 서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여기저기 다투고 헛소문 내서 억울하게 하고, 비아냥하며 놀리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다. 학생 중에 3명은 학교폭력 신고를 쌍방으로 한 상태였다. 그래서 쉬는 시간과 수업시간에 학생 간에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긴급 갈등조정으로 바로 바로 대응해 가면서 학생 사이의 오해와 원망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에 학교폭력신고로 피·가해 관계에 있는 학생들의 갈등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사과하며 잘 마무리되었다. 갈등조정을 마치고 아이들은 “이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일인가요? 사실 엄마·아빠들이 화가 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거예요.”하며 자신들보다 어른들이 문제라고 했다.

3) 교사-학부모 대화모임

이번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아이들만큼이나 학부모들의 입장도 다양했고, 부모들 간에도 긴장 관계가 있어서 학부모를 문제해결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교사-학부모 대화모임을 매주 3회 진행하였고, 교사로는 교장, 교감, 담임, 동학년 교사, 상담교사 등이 참석했다. 대화모임은 ‘교사와 학부모의 어려움과 고민 나눔’, ‘현재 학급 상황과 아이들의 문제해결 과정 공유’, ‘교사와 학부모 차원의 해법탐색’으로 진행되었다. 교사-학부모 대화모임 결과는 기록을 해서 교실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부모들은 학교에서 대화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긴장감도 낮아졌다. 마지막 대화모임 때 ‘학부모 공동체 약속’도 세웠는데, ‘자녀의 말과 감정을 공감해주되 내 아이 말만 믿지 말고 선생님께 확인하고 상대 아이나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다른 자녀에 대해 힘

답하지 않고, 직접 상대 부모와 나-전달법으로 대화하기' 등을 합의했다.

3주라는 긴 대화시간이 걸렸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교권침해는 사라졌고, 아이들은 편안해졌으며 학급은 안정화되어 갔다.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4. 교육 3주체 협력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안전하고 진솔한 대화자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운영방식은 피·가해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모임이나 학급공동체형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갈등조정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하며, 당사자들이 고통에 대한 공감과 진정성 있는 사과, 선입견과 오해의 해소, 원망의 마음 해소, 책임지는 행동 등..., 관계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그 결과 당사자 간 분쟁이 격화되거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대화를 통한 갈등조정은 상호이해와 책임지는 과정으로 관계개선과 분쟁해소에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사안은 갈등조정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높은 갈등조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아니라 증거가 모호한 관계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서로의 주관적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갈등조정 대화모임이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다.

학급공동체형성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적 기술을 익힘으로써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지금의 교육 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 간 관계의 단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처벌보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책임지기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의 초등 6학년 교실 사례처럼 '3주체가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해법을 탐색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협력의 과정'이 학교현장에서 가능하려면, 17개 시도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 정책을 보다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3주체 간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지금, 학교가 다시 살길은 교육 3주체의 협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화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통과 취약함을 돌보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위기 학급을 찾아가 보면, 정서적 위기 학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엔 심리적 위기의 교사와 심리적 위기의 학부모도 만나게 된다. 공동체의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 회복적 시도를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